

미신고 아동복지시설 문제로 바라본 아동보호체계의 공백 국회 토론회

일시_ 2021년 8월 17일(화) 오후 2시~7시

장소_ 국회본관 220호 및 유튜브(김상희TV)

(표지면지)

공동주최_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대표의원 권인숙), 국회부의장 김상희, 국회의원
신현영, 국제아동인권센터, 사단법인 두루,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움직이는청소년센터EXIT,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정치하는엄마들

CONTENTS

미신고 아동복지시설 문제로 바라본 아동보호체계의 공백 국회 토론회

발제

- 서초구 생명의샘교회 불법 아동복지시설의 아동학대사건 대응 경과 보고 00
박유리 활동가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 미신고 아동복지시설 사례로 살펴본 아동보호체계의 공백 00
강정은 변호사 (사단법인 두루)
- 국제인권규범에 비추어 본 불법 미신고시설의 아동권리 침해 00
김희진 사무국장 (국제아동인권센터)

토론

- 미신고시설의 추정 현황과 현실적 우려: 제도의 공백을 넘어 공공의 역할로 00
오진방 사무국장 (한국한부모연합)
- 실효적인 미신고시설 관리방안과 정책방향-장애인미신고시설 대응활동을 중심으로- 00
김정하 활동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 미신고 아동복지시설과 아동보호체계 00
김진석 교수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초기 상담부터 보호조치에 이르는 공공의 역할과 어려움 00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 미신고시설 관리와 예방을 위한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00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CONTENTS

미신고 아동복지시설 문제로 바라본 아동보호체계의 공백 국회 토론회

참고

1. 보도자료_ 5월 12일 서초구 생명의샘 교회 미신고 영유아 아동복지시설 학대 사건 고발 및 사건 해결을 위한 서초구청-서울시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00
2. 언론보도_ 진실탐사그룹 설록 연재 기사 스크랩 00
3. 언론보도_ "서초구 미신고 아동복지시설은 아동학대 사각지대", 베이비뉴스, 5월 13일 00
4. 언론보도_ "서초구청, 미신고 아동복지시설 '방치' 의혹...시민단체 고발 후 폐쇄", 경향신문, 5월 23일 00
5. 6월 2일 서초구 생명의샘 아동 미신고시설 학대피해아동 지원 관련 질의서 ... 00
6. 6월 9일 서초구청 미신고시설 학대피해아동 지원 관련 답변서 00

PROGRAM

미신고 아동복지시설 문제로 바라본 아동보호체계의 공백 국회 토론회

사회: 정치하는엄마들 강미정 활동가

시간	내용	발표
14:00-14:15	인사말	
14:15-14:30	서초구 생명의샘교회 불법 아동복지시설의 아동학대 사건 대응 경과 보고	박유리 활동가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14:30-14:45	미신고 아동복지시설 사례로 살펴본 아동보호체계의 공백	강정은 변호사 (사단법인 두루)
14:45-15:00	국제인권규범에 비추어 본 불법 미신고시설의 아동권리 침해	김희진 사무국장 (국제아동인권센터)
좌장: 소라미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15:00-15:15	미신고시설의 추정 현황과 현실적 우려: 제도의 공백을 넘어 공공의 역할로	오진방 사무국장 (한국한부모연합)
15:15-15:30	실효적인 미신고시설 관리방안과 정책방향 -장애인미신고시설 대응활동을 중심으로-	김정하 활동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15:30-15:45	미신고 아동복지시설과 아동보호체계	김진석 교수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5:45-16:00	초기 상담부터 보호조치에 이르는 공공의 역할과 어려움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16:00-16:15	미신고시설 관리와 예방을 위한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16:15-16:45	종합토론	

인사말



국회부의장 김상희

안녕하십니까? 국회부의장 김상희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이야기로 여러분과 인사 나누고 싶은데, 하루가 멀다 하고 안타까운 소식이 끊이질 않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특히 오늘은 ‘미신고 아동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을 다루게 되어 마음이 더욱 무겁습니다. ‘미신고 아동복지시설’은 달리 지칭할 명칭이 없어 ‘시설’이라고 부르고는 있지만, 실상은 개인이 아이들을 데려다가 케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과거 못 먹고 못 살던 시절에는 선의로 아이들을 보살피는 분들도 계셨지요. 하지만 그런 선의를 가졌던 분들은 이제 모두 국가에 공식적으로 신고를 하고 적절한 지원을 받으며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신고시설은 더 이상 필요치 않은 상황이라는 뜻이지요.

아직도 미신고 시설이 있다는 사실이 무척 당혹스러웠습니다. 오갈 데 없는 2세 미만의 영아들을 데려다가 학대를 서슴지 않은 목사 일당에게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버려지는 아이들이 있기에 미신고 시설이 존재한다는 당연한 이치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현 아동보호체계의 공백이 무엇인지 꼼꼼히 찾아내고,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가 그 시작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동학대의 온상이 되고 있는 미신고 시설이 이 땅에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 봅시다.

공동주최에 참여해주신 신현영 의원님과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 「국제아동인권센터», 「사단법인 두루»,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정치하는 엄마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국가는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방식으로 태어나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책임져야 합니다. 그것이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생한 아이들 중 단 한 명도 놓치지 않도록 의료기관 출생통보제를 도입하고, 공적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2월, 동료 국회의원 138명과 함께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학대사망사건 조사는 단순히 한 사건의 가해자를 가려내 처벌하자는 취지가 아닙니다. 다양한 유형의 사망사건을 조사하여 근본적인 학대 예방책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미신고시설 학대사망사건도 조사대상에 포함시키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다양한 유형을 조사하여 ‘아동보호체계의 공백’을 촘촘히 매워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귀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제안주시는 의견들이 입법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8월 17일
국회부의장 김상희

인사말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 대표 권인숙

안녕하십니까?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 대표 권인숙입니다.

〈미신고 아동복지시설 문제로 바라본 아동보호체계의 공백〉 토론회를 열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상황임에도 온라인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또한 토론회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신 김상희 부의장님, 신현영 의원님을 비롯해 국제아동인권센터, 사단법인 두루, 서울대 법전원 공익법률센터, 움직이는 청소년센터 EXIT,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정치하는엄마들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5월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아동인권단체들이 '서초구 미신고 시설 아동학대 사건'을 고발하면서 공론화의 물꼬를 터 주셨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그 연장선에서 공공 아동보호체계 전반을 돌아보고, 필요한 법·제도적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서초구 사건에서도 나타났듯이 미신고 아동복지시설은 부적절한 양육환경과 학대 등 아동 인권침해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미신고 시설에 대한 국가의 관리·감독은 아직 미흡한 수준입니다. 발제문에서도 언급되었지만, 미신고 시설 설치 관련 벌칙 규정은 1981년 개정 이후 지난 40년간 벌금만 다소 상향되었을 뿐이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실태조사나 관리 점검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공공 아동보호시스템이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잖은 아동들이 미신고 시설에 내맡겨지는 것은 현행 아동보호체계의 한계 때문입니다. 학대뿐만이 아니라 미혼부모, 부모사망 등 다양한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하지만, 현행 제도 하에서는 이들이 후순위로 밀려납니다. 후순위로 밀려난 보호 아동들은 수개월 대기해야 하는 국가 보호시설 대신 당장 입소할 수 있는 미신고 아동복지시설로 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UN 아동권리협약은 가정환경을 상실한 아동들에 대한 보호가 ‘국가의 책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전문가들은 서초구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지적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미신고 아동복지시설이 국가의 개입 밖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공적 체계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이 어쩔 수 없이 이러한 미신고 시설로 향하고 있고, 이들이 다시 아동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불법 미신고 아동복지시설의 현황을 살펴보고, 공적아동보호체계 강화 및 아동권리 침해 근절 방안 마련을 위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전문가 분들의 고견을 모아 아동보호체계의 공백을 촘촘히 채우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발제를 맡아주신 여러 활동가, 전문가, 부처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국가의 ‘보살핌’을 기다리고 있을 아동들을 위해 국회에서 입법과 제도개선의 노력을 보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8월 1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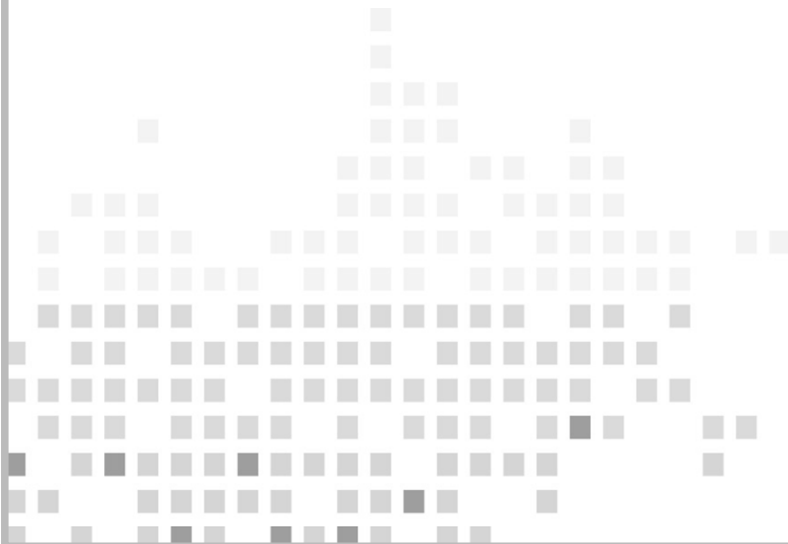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 대표 **권인숙** 국회의원

미신고 아동복지시설 문제로 바라본
아동보호체계의 공백 국회 토론회

발제 1

서초구 생명의샘교회 불법 아동복지시설의 아동학대사건 대응 경과 보고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서초구 생명의샘교회 불법 아동복지시설의 아동학대사건 대응 경과 보고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1. 사건 개요

- 2021년 3월 : 서울 서초구 생명의샘교회가 운영하는 미신고시설 관련 제보받음. 제보 내용은 주사랑교회 베이비박스 또는 자체 상담을 통해 아동 미신고 보호, 만2세 이하 아동 10여명을 보호하면서,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 및 방임, 과거 이 시설과 관련하여 2명의 아동 사망 등임.
- 2021년 4월 : 관련 단체(국제아동인권센터, 사단법인 두루,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정치하는엄마들, 성남교육지원청 교육복지 조정자 김진경, 연구자 황혜신 등) 대응 시작. 사건 법률 검토, 피해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절차 확인 등 진행.
- 2021년 5월 10일 : 관련 대응단체 서초구청 방문하여 적절한 보호조치 준비 요청 및 신고. 당일 서초구청 및 서초경찰서 생명의샘교회 즉시 조사 및 아동 분리조치 진행.
- 2021년 5월 11일 : 서초 생명의샘교회 불법 시설 폐쇄.
- 2021년 5월 12일 :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정치하는엄마들이 고발인으로, 사단법인두루, 국제아동인권센터 변호사들이 대리인으로 해당 사건 고발.
- 2021년 6월 2일 : 피해아동 지원 과정 심각한 문제가 확인되어 서초구청 질의 공문 발송.1)
- 2021년 6월 9일 : 위 공문 질의 관련 서초구청 답변 공문 수신2).
- 2021년 7월 말 현재 : 경찰단계 수사 진행 중.

1) [참고자료1] 참조

2) [참고자료2] 참조

2. 서초구 생명의샘 시설 현황

- 장소: 서초구 양재동
- 개소: 2019년 5월 18일 (2019년 6월 19일 첫 아동 보호)
- 직원현황
 - 1) A목사: 시설운영에 적합 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음
 - 2) B사모
 - 3) C선교사: 아동관련 기관에서 일을 해 본 경험도 없고, 관련 자격증도 없음
 - 4) D보육교사: 2021년 4월부터 근무
 - 5) 기타: 대부분의 인력을 자원봉사자가 채움
- 입소 아동 : 2021년 5월 10일 당시 총 5명의 아동이 있었고, 과거 10명 이상의 아동이 거쳐 감

3. 고발장 개요

- 1)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 신체적 학대 : 아동의 치료 명목과 악한 영이 있다는 이유로 안수기도를 하며 손으로 때리는 등의 행위, 강제수유, 일상적 고함과 물리적 폭력 등
 - 정서적 학대 : 아동이 울음을 그칠 때까지 방에 가두거나, 편견에 근거한 표현 등의 행위
 - 성적 학대 : 아동에 대한 성희롱적 발언
 - 방임 : 의료적 방임 등
- 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 시설 내 아동 질식사 사건 발생(2020. 5. 28.)
 - 당시 아동이 엎드려 자다가 질식하게 되었다고 알려져 있지만 A목사의 진술 외에 당시 상황에 대한 증거 없음. 만 2개월 아동이 스스로 몸을 뒤집었을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4~6개월에 몸을 뒤집음. 엎드려 재우지 않았더라도 만 2개월의 아동을 홀로 재우고 사망에 이르게 한 일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 그러나 피해자 가족은 가해자 미처별이 예상된다며 경찰의 권유로 합의하였고, 검찰에서는 기소유예 처분 함.

3) 아동복지법위반(무신고 아동복지시설 설치)

- A목사는 주사랑교회 베이비박스에서 2년간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2019년 시설을 직접 운영. A목사는 평소 봉사자들에게 국가의 아동보호체계는 사각지대(특히 미혼모와 위기가정에서 기한을 정해 대리양육을 하는 경우)가 있고, 생명의샘교회는 그 사각지대 아동을 돌보는 것이라고 강조함, 신고시설로 전환하지 않는 이유를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직접 선택해서 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해옴.

9 4. 서초구 생명의샘교회 불법미신고시설 아동학대 사건 현황

아동	A	B	C	D	E
생년	2019년생	2019년생	2019년생	2020년생	2021년생
입소 기간	2019년 7월 ~ 2021년 4월	2019년 11월 ~ 2021년 4월	2020년 5월 ~ 2021년 4월	2020년 11월 ~ 2021년 4월	2021년 1월 ~ 2021년 4월
입소 경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자가 출산 이후 양육이 어려운 상황이었음. - 출산 직후 주사랑교회 베이비박스에 갔고, 당일 베이비박스와 출생등록 후 다음 날 베이비박스 소개로 생명의샘 입소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자의 주거가 급하게 불안정하게 되어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 - 입양기관은 오래 걸린다고 해서 포기하고, 주민센터에 임대주택과 아동보육시설을 알아보니 대기가 많다고 해서 포기함. - 일주일 내로 아동을 보낼 수 있는 곳을 찾다가 인터넷 검색으로 생명의샘을 알게 됐고, 홈페이지 통해 문의함. - 다음날 가능하다는 전화가 왔고, 간단한 짐과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양육수당 통장, 카드를 챙겨오라고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자가 이혼 결정 이후 아동을 양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 - 입양기관은 기혼상태라서 입양이 안 될 거라고 하고, 주민센터는 한부모가 아니면 어렵다고 함. 민간기관 등에 문의했지만 모두 거절당함 - 이후 인터넷으로 주사랑교회 베이비박스를 알게 됐고, 문의 후 아동을 맡긴 후 한달 뒤 베이비박스가 생명의샘을 연계해 입소함. - 생명의샘 입소 이후 가정위탁을 진행하고자 했고, 가정위탁센터에서 생명의샘교회를 방문하기도 했으나 양육 강요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상태로 주사랑교회 베이비박스에 찾아가. 베이비박스에서는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을 맡을 수 없다고 거절하고 생명의샘을 소개해 입소함.

아동	A	B	C	D	E
고발 이후 진행 상황	<p>- 5/10 아동일시보호시설로 분리 전원. 그 주에 병원 소아과에서 신체 건강검진 진행함.</p> <p>- 5/28 엑시트, 두루 보호자 미팅 : 미팅 전 보호자는 서초구청에 어디든 보호자 거주지 소재 시설로 전원 하겠다는 의사 표현함. 단체와의 미팅을 통해 가정위탁 진행하기로 하고 구청에 의사 전하기로 함.</p> <p>- 5/28 보호자가 서초구청에 가정위탁 의사 문자로 보냈으나, 구청 답변 없었다고 함.</p> <p>- 6/1 서초구청이 Q광역시 R보육원으로 전원시켰으나 보호자에게는 알리지 않음.</p> <p>- 6/2 Q광역시 S구청에서 보호자에게 아동의 전원을 알리는 연락음. : 보호자가 서초구청에 문</p>	<p>- 5/10 아동일시보호시설로 분리 전원. 그 주에 병원 소아과에서 신체 건강검진 진행함. : 검진 내용을 보호자가 의사에게 직접 듣고 싶었으나 의사가 평일만 진료하고 보호자는 주말만 시간이 가능해서 직접 듣지는 못함. 구청 통해서 전해 듣기로함.</p> <p>- 5/16 김진경, 엑시트 보호자 미팅 : 5/13 서초구청으로부터 보육원/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중 선택을 해서 5/17까지 답변줄 것 요구받음. 구청은 공동생활가정을 추천함. 단체와 미팅을 통해 가정위탁 시도해보기로 함.</p> <p>- 5/17 보호자가 서초구청에 가정위탁 시도 의사 포함.</p> <p>- 5/20경 서초구청이 전화로 24시간어린이집 제안함 : 가정위탁은 시간이 많이</p>	<p>- 5/10 서울 P구 아동 그룹홈으로 이동 : 아동은 교회 시설이 폐쇄되던 날 P구 그룹홈으로 전원함. 이전에 보호자가 P구에 시설입소 의뢰를 했었고 그날 아침 자리가 나서 이동하게 됨.</p> <p>- 5/10 황혜신 보호자 미팅</p> <p>- 5/11 보호자 학대전담공무원 상담에 엑시트 동행</p> <p>- 5/23 병원 소아과에서 신체 건강검진 진행함. : 서초구는 P구로 갔으니 P구청이 책임져야 한다, P구청은 서초구청에서 있었던 일이니 서초구청이 지원해야 한다하며 서로 방어함. 단체 요구로 서초구청이 검진 진행함.</p> <p>- 5/28 P구청에서 상담으로 만나자고 하고, 보호자에게 언론사 인터뷰를 지적하며 본인들은 민원을 기사처럼</p>	<p>- 5/10 아동일시보호시설로 분리 전원. 그 주에 병원 소아과에서 신체 건강검진 진행함.</p> <p>- 연령이 어려 심리검사 불가. 발달검사 진행 예정.</p> <p>- 보호자가 대응단체와 소통을 거절해 추가 진행 안됨. 아동 보육원 전원만 확인함.</p>	<p>- 5/10 아동일시보호시설로 분리 전원. 그 주에 병원 소아과에서 신체 건강검진 진행함.</p> <p>- 5/9 정치하는엄마들, 두루 보호자 미팅 : 아동이 출생 미등록 상황이 가장 시급함 확인. 출생 등록 과정 지원하기로 함.</p> <p>- 5/24 보호자가 서초구청에 원가정복귀 의사 전함. : 서초구는 내부 회의 후 결과 안내하겠다고했고, 몇일 안되어 복귀 허가 연락을 보호자에게 함.</p> <p>- 5/28 엑시트, 두루 보호자 미팅 : 현재 보호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어서 원가정 복귀 절차 과정에서 양육환경, 지원 등을 제대로 확인했는지 절차 검토 필요</p> <p>- 6월초 출생등록이 안 되어 있어 아동의 사회복지관리</p>

아동	A	B	C	D	E
	<p>제제기 했으나, 타지역 시설로 이관되어 서초구청은 더 이상 책임이 없음을 되풀이함. S구는 서초구청으로부터 일시 보호시설은 보호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야기와 전원 외 가정위탁 등에 대한 내용은 공유받지 못했다는 이야기 확인함.</p> <p>- 6/6 보호자가 R보육원에 가서 입소동의서 작성 : 구청들과의 통화에서 서초구청은 지역을 이동했으니 자기 관할이 아니라 했다/ 입소 원서를 써서 그룹홈 이동은 어렵다고 했다/ 가정위탁은 대기가 길고 오래 맡길 수 없다고 했다 등의 이유로 보육원 입소 결정 알림.</p> <p>- 연령이 어려 심리검사 불가. 발달검사 진행 예정이었으나, 전원 상황이라 검사 불확실.</p>	<p>걸리니 24시간어린이집에 보낼 것을 제안함. 보호자 거주지인 T시의 24시간어린이집은 운영중이 아니었고, 보육원과 유사한 운영임을 확인하고 가정위탁 의사 다시 표함</p> <p>- 보호자가 1년 이후 양육계획이 있어 가정위탁 요구함. 이후에도 계속해서 아동일시보호시설의 아동 사례담당자와 서초구청의 사례담당자가 아동 면회 시 보육원 입소 권유 반복됨.</p> <p>- 6/14 보호자 거주지 가정위탁지원센터 지원 신청 상담</p> <p>- 7/16 가정위탁 대상자 선정</p> <p>- 8/2 가정위탁처 전원 예정</p> <p>- 연령이 어려 심리검사 불가. 발달검사 진행 예정이나 가정위탁으로 거주 광역시가 달라지고, 위탁자가</p>	<p>응대하지 않았다며 추궁함.</p> <p>- 기타 심리검사 지원 제외. : 시설 고발 이전 전원으로 서초구청 의료지원에서 제외되고, P구청과 서초구청의 책임전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p> <p>- 6/15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차 연락음. : 보호자가 아동에 대한 심리치료 요구하자, 생명의샘 사건 재판 결과가 나와야 지원 가능하다고 답변함. 해당 사건은 5월 고발 이후 7월 말 현재 경찰조사단계임.</p>		<p>번호 신청</p> <p>- 6/15 서초구청과 보호자 거주지 W시청 공무원이 보호자 생활환경 조사 방문 : 당시 보호자는 주거지가 고정되지 않았음. 양쪽 공무원 미팅 시 임시주거 마련 요청했으나, W시 공무원이 주민센터에 가서 LH 임대주택을 신청하라 정도의 답변을 했다 함.</p> <p>- 6/18 서초구청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원가정복귀 불가 결정 : 애초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회의없이 원가정복귀 결정 한 것으로 보임. 보호자가 출생등록을 완료하고 주거와 소득 안정 이후 재심 진행하기로 함.</p> <p>- 연령이 어려 심리검사 불가. 발달검사 진행 예정.</p>

아동	A	B	C	D	E
	- 보호자는 이후 양육계획이 있음.	검사 예정 병원으로 이동은 어려운 상황. 서초구청은 해당 병원이 아니면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임.			
서초구청 지원 과정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초구청에서 보호 지원제도에 대해 자세한 설명 없이 선택하라고 함. - 단체와의 미팅에서 지원체계를 설명하고 번거롭더라도 가정위탁을 우선 시도해볼 것을 제안했고, 지역 우선순위는 보호자 거주지 -서울로 하기로 함. - 보호자가 가정위탁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보육원으로 전원시킨 후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안내했고, 보호자가 분노함. - 이후 보호자가 서초구청, S구청과 소통 과정에서 보육원 입소 결정함. 공동생활가정 또는 가정위탁 시도 거부하는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초구청에서 보호 지원제도에 대해 자세한 설명 없이 선택하라고 하고, 보호자에게 그룹홈을 추천함. - 보호자가 서초구청과 통화에서 일시보호시설에 있다가 가정위탁을 갈 수 없는지 문의했는데, 수서 보호시설에 아동 수가 많아서 어렵다고 했다고 함. 전원을 하게 되면 사전에 보호자에게 알리기로 함. - 보호자가 단체와 소통하면서 가정위탁을 시도해보기로 하고, 서초구청에 가정위탁 의사 전함. - 서초구청이 보호자에게 가정위탁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24시간 어린이집을 다시 제안함. : 구청은 이 과정에서 보육원/ 그룹홈/ 가정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발 후 단체가 서초구청에 아동의 의료 관련 지원을 서초구가 책임져야 함을 요구함. - 서초구청은 아동이 P구로 갔으니 P구청이 아동의 의료지원을 진행할 것이며 본인들도 공문으로 요청하기로 함. P구청에 단체가 확인하니, P구로 오기 전이니 서초구청이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 확인함. - 서초구청은 가와사키병은 학대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지원 어렵다는 입장이었음. 이런 상황을 거쳐 아동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이후 의료지원 책임소재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자는 아동이 출생등록이 되는대로 본인이 키우고 싶다는 의견을 최근 표시함. - 단체는 보호자에게 아동과 함께 살 용기를 낸 것은 지지하나, 안정적인 주거와 소득 마련 우선 제안함. - 서초구청은 보호자의 요청을 받아 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승인함. 친모의 의견이 달라질 경우 서초구청에 재조정 요청하기로 함. - 결과적으로 보호자는 원가정 복귀 결정이 반복되어 거절당한 모양새가 됨. 서초구청이 처음부터 보호자의 환경을 몰랐던 것이 아닌데, 보호자에게 아동의 입장에서 현재 최선의 보호방안을 안내하지 않았고, 원가정 보호를 위한 지원

아동	A	B	C	D	E
		<p>24시간 어린이집의 각 특징과 장단을 설명하지 않고, 제안한 선택지에 대해 빠른 선택을 요구함.</p> <p>- 장기 24시간 어린이집은 보육원과 크게 다르지 않게 운영됨을 확인하고, 서초구청에 다시 가정위탁 시도 의사 전하기로 함.</p> <p>- 서초구청의 의뢰로 U시청에서도 24시간 어린이집을 제안해서 보호자가 가정위탁을 우선 시도하고 싶다는 의사를 재차 전함.</p> <p>- 아동이 겪은 상황과 보호자가 현재 양육이 어려운 상황을 U시청에 아주 구체적으로 단체와 함께 한번 더 설명하기로 함.</p> <p>- 서초구청에서 U시청과 가정위탁센터에 아동의 보호 조치가 필요함을 공문으로 전하면 좋겠다는 의견받음.</p>			<p>을 보호자와 함께 설계하고 연계하지도 않았음. 보호자 입장에서는 서초구청(정부)이 원가정 복귀에 대한 결정만 번복한 것으로, 아동을 데려오지 못할까봐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해짐.</p>

5. 서초구 생명의샘 아동 미신고시설 사건을 통해 본 위기상황 아동 및 가족 지원 체계의 미비점

문제상황	세부내용	필요한 지원 체계
아동과 거주하기 어려울 때 공적 지원 체계 이용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 C 아동은 주민센터, 구청, 가정위탁지원센터, 입양 기관 등에 아동의 임시 양육 지원 요청했으나 모두 이용가능하지 않았음 - 불가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센터와 구청은 영유아가 갈 수 있는 시설이 없고, 대기를 기다리려면 수개월 걸릴 수 있다고 답함. 이 과정에서 주민센터와 구청은 보호자에게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또는 시설이 아니면 지원가능한 제도가 무엇인지 설명하지 않음. :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양육회피를 계속 의심하고, 일반 위탁을 신청을 포기하도록 유도함. : 입양기관은 기혼상황이거나 친부가 등록되어 있는 등의 이유로 거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대가 아니더라도 위기상황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당일 입소 가능 일시보호시설 확충 및 임시거주지 제공 -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감독 강화 및 일반위탁 회피 개선 방안 필요
위기상황 아동 및 가족 지원 공적체계 부재로 보호자와 아동을 불법아동시설로 내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 C, E 아동은 불법아동유기시설인 베이비박스의 소개를 통해 미신고시설인 생명의샘교회에 입소함 - 베이비박스는 공식적으로 입소 아동을 공적체계로 연계하고 있다고 하지만, 생명의샘교회와 같은 미신고시설로 연결되고 있음이 본 건을 통해 확인됨. 서울시·복지부 차원 현황 파악 및 대응은 진행되지 않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청, 일반양육시설, 입양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베이비박스 등을 통해 미신고시설 현황 조사 필요
보호조치 필요한 아동에게 아동 최상의 원칙 미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초구청이 A, B, E 아동 보호자와의 상담과정에서 아동에게 가장 적절한 지원체계 연결을 의도적으로 회피. - 2020년 5월 21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일반가정위탁 확대 및 활성화 방안 발표함. 하지만 현장에서 적용되지 않고 있음. - 서초구청은 사건 공론화 전 단체와의 면담에서 가정위탁 우선 추진을 협의함. 그러나 가정위탁 의사를 표시한 보호자에게 공동생활가정/24시간어린이집 등을 제안하며 가정위탁은 신청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등의 말로 보호자 불안 조성. - 서초구청은 각 보호체계 특성에 대해 보호자에게 설명하지 않았고, 체계별 특성을 모르는 보호자가 보육원을 가겠다고 하니 빠르게 전원시킴. 보육원은 대규모 수용시설로 UN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을 수용시설에 거주하도록 하지 않아야 함을 권고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 지원 매뉴얼이 현장에서 적용되는 과정이 정책취지와 다르게 적용되거나 미이행 되고 있는 상황 점검 및 이에 따른 개선 - 현장에서 체계없이 다수의 관련 공무원 혹은 사회복지종사자가 보호자의 양육의지를 개별로 확인하고, 통합적으로 소통하려는 의지없음. 구조적으로도 통합소통망 전무함. 양육회피 의심하는 상황 개선과 통합소통망 필요 - 보육원 신규입소 금지 및 대안적 양육지원 확대를 위한 예산 대폭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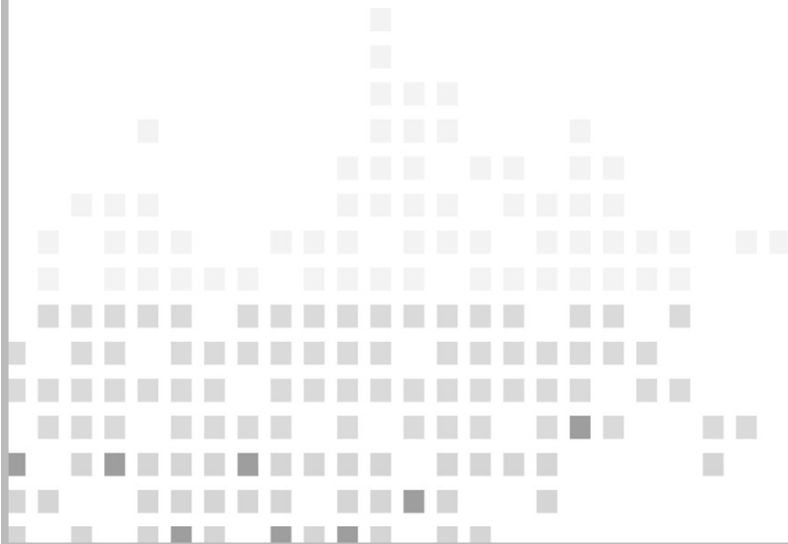
문제상황	세부내용	필요한 지원 체계
<p>위기상황 아동 및 보호자에 대한 반인권적 행정 절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건 발생 후 A아동이 일시보호시설에서 보육원으로 전원되는 과정에서 전원 다음 날 보호자에게 연락함. 아동의 거처가 결정되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아동과 보호자를 보호조치 과정의 당사자가 아닌 수동적인 대상으로만 대하는 것임. 전원 후 보호자가 서초구청에 문제제기 했으나, 지역을 옮겼으므로 자신들의 관할이 아니라며 문제 회피함. - B아동의 보호자는 5/10 이후 5명의 공무원으로부터 “아이를 정말 키울 수 없느냐?”라는 질문을 받음. 양육 환경 마련되지 않은 보호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공무원에게 ‘납득’시키는 모욕적인 상황을 반복해야 했음. - C아동은 일시보호시설이 아닌 구 그룹홈 입소를 이유로 양쪽 구청 모두 의료지원 책임을 미룸. - E아동은 보호자가 양육할 수 있는 가정환경인지에 대한 조사없이 보호자가 원가정 복귀 희망의사를 표시하자 바로 원가정 복귀를 서초구청이 승인함. 단체 문제제기 이후 가정방문 등 계획을 잡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상황 아동 지원체계 일원화

미신고 아동복지시설 문제로 바라본
아동보호체계의 공백 국회 토론회

발제 2

미신고 아동복지시설 사례로 살펴 본 아동보호체계의 공백

강정은 변호사(사단법인 두루)



미신고 아동복지시설 사례로 살펴 본 아동보호체계의 공백

강정은 변호사(사단법인 두루)¹⁾

1. 들어가며: 국가는 왜 아동을 미신고시설로 내몰고 있는가.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날 권리를 보장하고 양육과 보호의 위기상황에 놓인 아동을 보호할 책무는 ‘국가’에게 있다. 「아동복지법」(이하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이라고 정의한다.

미신고시설에 내몰린 아동 또한 국가가 책임져야 할 “보호대상아동”이다. 가장 취약한 상황에 처한 영유아를 미신고시설로 향하게 하는 국가의 책임을 진단해야 한다. 국가는 현재 아동보호체계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더 이상 미신고시설로 아동이 유입되지 않기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공공이 아동보호시스템의 첫 관문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하는지 답해야 한다. 공공의 아동보호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적지 않은 아동들이 공공의 관리·감독이 닿지 않는 미신고시설에서 위험을 떠안으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이번 발제에서는 미신고 아동복지시설에 관한 현행 법제와 그간 정부의 관련 정책과 대응 현황, 이번 사례를 통해 드러난 아동보호체계의 한계와 문제점을 검토하고, 불법 미신고시설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해보고자 한다.

1) 비영리전업 공익인권변호사단체, www.duroo.org

2. 미신고 아동복지시설 관련 법제 현황

가. 대한민국헌법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에 따르면, 아동 또한 기본권의 주체로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 인격권, 신체의 자유 등을 가진다(제10조, 제12조 등). 미신고시설에서 보호되고 있는 아동 또한 기본권의 주체이며, 이들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헌법 제37조제2항). 또한 헌법 제11조에 따라 아동을 포함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미신고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 또한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아동’이라는 이유 혹은 미신고시설에서 보호되고 있다는 이유로 달리 취급받거나 차별받아서는 아니된다.

나.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제50조제2항, 제71조제3항제3호). 신고하지 않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관련 기관의 장에게 부과되는 종사자의 전문성 확보, 시설환경 등 각종 책무 규정에서도 배제된다.

제50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④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 15.>

제71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51조제2항에 따라 다른 아동복지시설로 옮기는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2. 제22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한 사람
2의2. 삭제 <2020. 12. 29.>

2의3. 삭제 <2020. 4. 7.>

3. 제5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4.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제54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전문인력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
5. 제56조에 따른 사업의 정지, 위탁의 취소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을 받고도 그 시설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한 자
6. 삭제 <2020. 12. 29.>
7. 제66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거나,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신고 내지 인가 등을 받도록 하는 규정은 아동복지법 제정 당시부터 존재했다. 아동복지법 제정 당시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사회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해 서류를 구비해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를 거쳐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청한 뒤 인가를 얻어 재단법인의 형태로 설치할 수 있었다(「아동복지법」²⁾ 제17조, 「아동복지법시행령」제11조). 당시 설치 기준은 입소한 아동이 건전하고 행복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위생적이고 그 환경이 아동복지에 적합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설치 기준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아동복지법시행령」 제13조). 이와 같이 아동을 보호하는 시설에 대한 국가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입법자의 의지는 아동복지법 제정 당시부터 표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동복지법³⁾은 1981. 4. 개정되면서, 사회복지법인과 재단법인은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법인과 법인 외의 자는 도시자 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제20조제2항 및 제3항). 이 때,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규정이 마련되었다(제35조제2호). 이후 1997. 12. 사회복지법인과 재단법인도 인가가 아닌 신고를 거쳐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미신고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벌칙 규정이 벌금만 소폭 상향되었을 뿐 그 내용을 유지한 채 1981년부터 무려 40년간 존재해왔다는 점이다.

한편, 아동복지법이 2020. 12. 개정되어(2021. 3. 30. 시행),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

2) 법률 제912호, 제정 1960. 12. 30., 시행 1962. 1. 1.

3) 법률 제3438호, 전부개정 1981. 4. 13., 시행 1981. 4. 13.

수·구청장 이외의 자가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호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새롭게 마련되었다(제15조제2항). 하지만 이 규정에 의해 책무를 지는 사람은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외의 자이고, 만약 보호조치를 의뢰하지 않을 경우 공적으로 개입할 근거가 없다. 또한 이를 위반해 A시설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호조치를 의뢰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도 없다. 따라서 개정된 제15조제2항은 미신고시설 등에서 아동을 보호하는 경우를 예방하거나 관련 사항을 점검할 입법적 수단이 되지 않는다고 보인다.

또한, 함께 개정되어 2021. 3.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및 실태조사(제15조의4)’ 또한 미신고시설에서 보호되고 있는 아동을 발굴할 수 있는 제도인지 세심하게 검토해야 한다. 이 규정에 따라 접근할 수 있는 자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내지 영유아건강검진 실시 기록,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생활기록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이다. A시설의 경우 아동의 주소지는 기존 양육자의 주소로 그대로 두고 영유아검진이나 병원을 갈 경우에도 보호자가 동행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럴 경우 본 규정에 의해서도 아동을 발굴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다.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업”이란 아동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른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하며, 이때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제2조 제1호 및 제4호). 다만, 사회복지사업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해 아동복지법 등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을 우선 따르도록 하고 있다(제3조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법 제34조제2항, 시행규칙 제20조). 이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운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제54조제3호). 신고하지 않고 사회복지시

설을 운영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공통적으로 부과되는 책무규정 역시 모두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국가의 관리·감독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6. 2. 3., 2017. 10. 24.>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④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1. 8. 4., 2019. 1. 15.>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9. 1. 15.>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9. 1. 15.>

[제목개정 2011. 8. 4.]

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0. 24., 2018. 12. 11., 2020. 3. 31.>

3.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전문개정 2011. 8. 4.]

3. 미신고 아동복지시설 관련 정부 대응 현황

가. 미신고 아동복지시설 실태 파악을 위한 점검

보건복지부는 2000년대 초반까지는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을 관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미신고시설 실태를 파악하기 노력하고, 관련 대책을 세우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미신고시설에서 보호되고 있는 많은 아동들을 발견하기도 했지만, 아동의 특성과 맥락, 아동 권리의 관점으로 아동에 특화된 대응은 부재했다.

2002. 6. 보건복지부가 작성한 “미신고 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 추진지침”⁴⁾에 따르면,

대책의 세부추진사항으로 다음 7가지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2002년 추진지침에 따르면, 시·군·구 미신고 복지시설 담당공무원을 지정하고(아동 등 시설담당자를 미신고복지시설 담당자로 지정·운영), 시·군·구 담당공무원은 미신고 복지시설 관리대장을 관리하고 담당 공무원이 분기별 1회 이상 시설을 방문하는 등 미신고 복지시설을 관리하도록 기재되어 있다.

1. 미신고 복지시설 조건부 신고제 운영
2. 조건부 신고시설에 대한 지원
3. 비닐하우스, 가건물 등 취약시설 이전
4.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5. 미신고 복지시설 관리감독 강화
6. 사회복지시설 신고기준 완화 및 공동생활시설에 대한 법령상 근거 마련
7. 사회복지시설을 통한 취약계층 보호 확대

2004년에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유기, 유괴 및 실종사건이 빈발하자 미아 등을 찾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경찰과 합동으로 3. 1.부터 3. 31.까지 1개월간 전국 미신고복지시설의 아동 보호실태를 대대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⁵⁾ 이 보도자료에는 “적법절차 없이 아이를 양육하는 행위는 형법 제287조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된다는 것을 주지시켜 보호아동에 대한 신고를 촉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2004년 미신고복지시설 아동보호실태 합동점검에 따른 실태 결과뿐만 아니라 이후 사후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이 보도자료에서 제시된 미신고 아동복지시설만 보더라도, 그 시설수는 134개, 생활자는 1,767명, 수급자는 1,033명에 달하는데, 이에 대한 사후조치를 어떻게 했는지에 관한 내용 또한 찾아볼 수 없다.

4)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0&CONT_SEQ=22881&page=1 (2021. 8. 1. 확인)

5)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28174 (2021. 8. 1. 확인)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04. 3. 4.), “미신고복지시설 아동보호실태 합동 점검 실시” ■

- 미신고복지시설 현황 ('04년 1월)

(단위 : 개, 명)

구분	계	노인	모자복지	부랑인	아동	장애인	정신	결핵	한센
시설수	1,074	474	14	35	134	389	21	5	2
생활자	19,991	8,777	149	890	1,767	7,093	1,128	97	90
수급자	9,193	3,693	14	264	1,033	3,923	13	39	64

※ 경찰은 3천여개로 추정

이후 보건복지부는 2005. 7. 26. ‘미신고 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의 성과 및 향후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아동보호시설, 노인생활시설, 장애인생활시설, 부랑인시설과 같은 복지시설 중 2002. 6. 이후 시·도를 통해 파악된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은 총 1,288개소에 달하며, 보건복지부는 신고시설로 전환한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하되, 유예기간까지 신고시설로 전환하지 못한 미신고시설에 대해서는 9월부터 민관합동조사를 실시해 시설별로 양성화하거나 폐쇄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⁶⁾ 또한, 보건복지부가 2005. 7. 25. 작성한 “미신고복지시설 관련 참고사항(0725)” 자료에 따르면,⁷⁾ “2005년 7월 31일 이후 신규 미신고 복지시설이 발생하였거나, 신규 미신고복지시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미신고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과는 별도로 적발 즉시 행정처분을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나. 아동분야 사업안내 - 미신고시설 관리 관련 지침⁸⁾

보건복지부가 작성하여 배포한 ‘2020 아동분야 사업안내 1’은 ‘미신고시설 관리’에 관한 내용을 별도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지침일 뿐 이 지침이 현장에서 적용되어 미신고 아동복지시설이 실제로 관리되고 있는지에 관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다.

‘2020 아동분야 사업안내 1’에 따르면, 미신고시설 관리는 2006년도 미신고복지시설 관리방안의 기본방향, 행정처분 절차, 일정 등에 따라 추진하되, 자체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

6) KTV 국민방송, 2005. 7. 26.자 방송, “복지부, 미신고 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 성과와 전망”,

https://www.ktv.go.kr/content/view?content_id=122894 (2021. 8. 1. 확인)

7)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s://www.mohw.go.kr/react/jb/sjb0601vw.jsp?PAR_MENU_ID=03&MENU_ID=03160501&page=14&CONT_SEQ=34457 (2021. 8. 1. 확인)

8) 보건복지부, 2020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1, 202-205쪽.

여 추진하는 것(미신고시설에 대해 최대한 자율신고를 유도하고 부득이 행정처분시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을 기본 방향이라 밝히고 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DB검색을 통한 미신고시설 조사를 제시하고 있는데, 보장기관(시·군·구)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확인 조사할 때 중점 관리대상가구에 더하여 해당 지자체 시설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미신고시설이나 사회복지통합망(행복e음)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주소지를 검색하여, 동일 주소지에 동일 보장가구원이 아닌 자가 5인 이상 거주하는 가구의 경우 정기·수시조사에 포함하여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조치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시설담당 공무원은 현장 확인 후 미신고시설 등 불법시설일 경우, 수급자에게 불법시설임을 고지하고, 보장시설을 안내하고 입소를 유도하도록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기초생활수급자 DB검색을 통한 미신고 아동복지시설 조사가 2006년 이후 실제로 실시된 사례가 있는지 또한 확인이 어렵다.

한편 생활아동 7인 이하의 가정처럼 생활하는 소규모 미신고시설은 공동생활가정 시설로 분류하여 신고를 유도하고, 2006년까지 추진한 미신고시설 양성화 정책 결과 남은 미신고시설의 신고전환 또는 폐쇄업무 및 향후 발생하는 미신고시설에 대한 감시 및 조치 등을 통해 관리하겠다고 명시하고 있다. 미신고시설에 보호 중인 아동 실태를 파악하고 보호자 등 개별면담을 실시하여 아동에게 대한 보호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취해야 할 행정사항 또한 기재하고 있다. 각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관내 미신고 아동복지시설(개인운영시설 포함)에 대해 수시로 실태를 파악·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점검 결과 아동학대, 회계부정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가능한 생활자 전원조치 및 시설폐쇄 등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미신고시설 발생 징후 포착 시 바로 현장 확인 및 아동(관계자) 상담(면담) 등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발생근원을 차단하고, 신고전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시설이나 전환을 거부하는 시설 등은 생활자 전원조치 및 시설폐쇄 조치를 실시, 시설폐쇄를 거부하는 경우 각 개별법에 따라 고발 등 조치하도록 기재되어 있다.

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 관련 지침

보건복지부는 매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라는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하고 있다. ‘2021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⁹⁾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여부는 시설운영자가 주관적으

9)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s://www.mohw.go.kr/react/jb/sjb0601vw.jsp?PAR_MENU_ID=03&MEN

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지에 따라 판단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때, 미신고시설의 판단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2021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2쪽 】

사회복지시설의 범위(미신고시설 판단 기준)

* 시설 운영자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더라도 아래의 경우는 시설명칭, 운영주체에 상관없이 사회복지시설로 분류(특히 생활시설의 경우 미신고시설 관리대책과 관련하여 다음 내용을 참고할 것)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개별법상 요보호대상자 중 거주 또는 종교 등을 선택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를 보호하는 경우(가족의 의뢰에 의한 경우에도 해당)

[대표적인 예]

- 「장애인복지법」의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 뇌병변장애인 등
- 「노인복지법」의 치매노인, 자신의 의사를 표출할 수 없는 중증노인 등
- 「아동복지법」의 요보호아동 전체
- 「정신건강복지법」의 정신질환자

㉡ 시설이 주장하는 목적(종교활동 등)과 달리 사회복지 개별법상 요보호대상자가 본인 또는 가족의 보호요청에 의해 동 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생활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는 시설장의 일방적인 종교목적 주장은 수용 곤란

㉢ 사회복지시설임을 외부에 표방하여 운영하는 경우

- 외부 간판, 소식지, 홍보, 외부활동 등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임을 명시하거나 표방하는 경우
- 거주 및 보호를 목적으로 생활인을 모집하는 경우
- 보호하고 있는 생활인을 근거로 후원금품을 모집하는 경우
- ⇒ 동 기준에 따라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는 경우 개별 법률에 따른 시설 신고·인가 등이 필요한 대상임
- 신고·인가 등 없이 운영할 경우 벌칙이 적용됨을 유의

서초구 소재 미신고 아동복지시설(이하 “A시설”)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미신고시설 판단 기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거주 또는 종교 등을 선택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없거

나 부족한 아동복지법상 요보호아동을 보호하였고, ㉠요보호대상인 아동이 가족의 보호요청에 의해 이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였으며, ㉡A시설은 홈페이지에 “아기를 위탁하는 비영리 시설” 또는 “미혼모 아기들 장기위탁시설”이라고 소개하여 외부적으로도 아동복지시설임을 표방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신고하지 않고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해당 시설은 폐쇄 조치하여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미신고시설 양성화 정책’에 따라 2005. 8. 1.부터 2009. 12. 31.까지 완화된 신고요건을 적용(시·군·구 신고)한 시설인 개인운영신고시설은 각 시설과의 지침에 별도의 명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09. 12. 31.에 완화기준의 적용이 종료되었으므로, 동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점도 안내하고 있다. 이 지침은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을 관리·감독하는 시·군·구 시설담당공무원의 업무를 위해 작성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2021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7쪽 ■

가 사회복지시설 신고제도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법 제34조)

【신고하지 않고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법 제54조제3호)에 과하는 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해당 시설은 폐쇄 조치하여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 요망

4. 미신고 아동복지시설 사례로 살펴 본 아동보호체계의 문제점

가. 형해화된 미신고시설 설치·운영 벌칙 규정 및 관련 지침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국가에 신고하지 않고 시설을 설치하여 아동을 보호하는 것은 법률상 금지된다. 법률적 근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나 ‘아동분야 사

업안내’ 등 미신고시설 관리에 관한 지침도 살아있다. 지침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내 미신고 아동복지시설에 대해 수시로 실태를 파악·관리하고 점검결과 아동학대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가능한 생활자 전원조치 및 시설폐쇄 등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A시설만 하더라도 폐쇄조치가 되기 전 시설에서 보호 중이던 생후 2개월이었던 아동이 돌연 사망했고 당시 경찰이 학대 혐의 등으로 수사를 진행했고 아동보호전문기관 또한 같이 대응했지만, 미신고시설이던 A시설에 대한 행정적 조치 그리고 당시 A시설에서 보호되고 있던 아동들에 대한 그 어떤 보호조치도 없었다.

미신고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국가의 대응은 2000년대 초반에 멈춰있다. 신고하지 않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아동을 보호할 경우에 관한 벌칙 규정은 1981년부터 40년간 존재해왔지만, 그 규정에 따라 미신고 아동복지시설 관리 이행상황을 점검하거나 실제로 벌칙을 가한 전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나. 아동보호체계와 분리·단절, 사인에 내맡겨진 아동보호: 국가의 아동보호 책무 이행 부재

2019. 5. 정부는 관계부처합동 이름으로 “포용국가아동정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보호대상아동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도록 시스템을 혁신”하겠다고 하며, “학대·빈곤·유기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요보호아동에 대해 보호결정·관리·원가정 복귀 전 과정을 지자체 책임 하에 시행할 수 있도록 공적 보호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부는 미신고시설에서 보호되고 있는 아동에 대한 실태조차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미신고시설에 유입되고 있는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 또한 찾아볼 수 없다.

미신고시설 보호 아동은 공공의 아동보호체계와 철저히 분리되고 단절되어 있다. 미신고 시설에 대한 종사자의 전문성, 안전한 양육·보호환경 등 국가의 적절한 관리·감독이 부재한 결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학대 등 인권 침해상황은 온전히 아동이 떠안고 있다. A시설의 경우 보호되던 아동이 질식사료 사망하거나, 시설에서 생활하다 원가정으로 돌아간 지 1개월도 채 되지 않아 양육자의 극심한 학대로 아동이 사망하기도 했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A시설 종사자로부터 더 자주 학대에 노출되던 한 아동은 양육이 어렵다는 이유로 장애인복지시설로 전원되기도 했다. 그 가운데 국가의 개입은 전혀 없었다. 아동이 시설에서 어떻게 사망하게 되었는지, 사망이 학대와 무관한 것인지, 아동이 복귀할 가정이 아동을 양

육할 준비가 되었는지 점검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전원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아동은 자신의 욕구와 특성이 고려된 지원을 받으며 안전하게 양육·보호되고 있는지, 국가는 묻지 않았으며 지금도 여전히 묻지 않고 있다.

다. 학대피해아동 중심의 아동보호체계의 한계: 국가의 보호대상아동 진입 관문(Gateway) 역할 부재

아동복지법이 정하는 “보호대상아동”은 학대피해아동에 국한하고 있지 않다. 학대는 열거된 사유 중 하나일 뿐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도 포함하고 있다(제3조제4호). 국가통계포털의 ‘보호대상아동현황 보고’(출처 보건복지부)만 보더라도 보호대상아동의 발생 원인으로는 미혼부모·혼외자, 부모빈곤·실직, 부모사망, 부모질병, 부모교정시설입소, 부모이혼 등이 제시되고 있다. 학대가 아닌 사유로는 보호대상아동으로 진입하지 않도록 아동의 원가족보호 지원을 위해 국가의 역할을 투여하는 것은 중요하고 필요하다. 하지만 학대가 아닌 사유로 보호대상아동으로 진입하는 아동이 많다는 현실 또한 직시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국가통계포털¹⁰⁾ ■

시점	보호대상아동 발생수	귀가 및 연고자 인도	보호대상아동의 발생원인										
			소계	유기	미혼부모·혼외자	미아	비행·가출·부랑	학대	부모빈곤·실직	부모사망	부모질병	부모교정시설입소	부모이혼 등
2016	5,221	638	4,583	264	855	11	314	1,532	290	286	126	-	905
2017	4,850	725	4,125	261	847	12	227	1,442	223	279	87	-	747
2018	4,538	620	3,918	320	623	18	231	1,415	198	284	92	-	737
2019	4,612	565	4,047	237	464	8	473	1,484	265	297	83	-	736
2020	5,053	933	4,120	169	466	11	468	1,766	181	279	75	166	539
평균	4,855	696	4,159	250	651	12	343	1,528	231	285	93	166	733

A시설 사례에서도 학대가 아닌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하는 경우 아동보호체계에서 후순위로 밀려나게 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동의 보호자가 A시설을 찾기 전

10)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TX_117341138&conn_path=I2 (2021.

8. 1. 확인)

에 먼저 찾아간 곳이 주민센터, 구청, 가정위탁지원센터 등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이 때 보호자는 주민센터, 구청 등에 양육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당장 아동과 함께 살 공간이 없었던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할 준비가 될 동안 임시로 아동을 보호할만한 곳이 있는지 문의했었다. 하지만 주민센터나 구청은 ‘아이를 정말 키울 수 없느냐’를 여러 번 되 물어 마치 보호자로 하여금 양육을 회피하는 사람으로 간주하여 절망감을 안기거나, ‘아이를 양육할 친인척이 없느냐’와 같은 질문을 반복할 뿐이었다. 혹은 영유아가 갈 수 있는 곳이 매우 적어, 아동이 갈만한 시설을 찾기까지 대기 기간이 수개월 걸린다는 것이었다. 그 어떤 것도 보호자의 질문, 요청에 대한 응답이 아니었다. 결국 보호자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A시설을 찾게 되었다. A시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당장 내일 아동을 맡길 수 있다고 했다.

공공이 아동보호의 관문(Gateway) 역할을 잘 이행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해야 한다. 왜 공공의 진입장벽이 이리도 높은지, 보호자가 왜 주민센터나 구청을 찾지 않는지, 보호자가 이와 같은 공공의 시스템에 접근했다라도 왜 공공은 역할을 하지 못했는지 질문하고 그 답을 찾아야 한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 그리고 그 아동을 양육하는 보호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먼저 문을 두드리고, 이 때 국가가 보호자 및 아동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다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이미 2019. 포용국가 아동정책은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요보호아동 발생시 보호조치 결정에 필요한 상담 및 가정조사를 지방자치단체가 책임 있게 ‘직접’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그 변화의 일환으로, 2021. 6. 30.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아동보호전담요원(민간전문인력, 아동복지법 제13조제4항)이 입양을 보내기 원하는 친생부모의 상담까지 맡게 되었다.

이와 같이 개편된 아동보호체계에 따를 경우, 미신고시설에 유입되는 아동과 가정에 대한 상담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아동보호팀, 아동보호전담요원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A시설의 경우 폐쇄 당시 보호하고 있던 5명의 아동 중 3명의 아동이 베이비박스의 소개를 통해 A시설로 입소된 것으로 파악되었다.¹¹⁾ 민간에 의해 민간으로 아동이 내맡겨지고 있는 현실에서 공공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11) A시설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아동의 입소경로 확인

라. 영유아¹²⁾의 특성을 고려한 아동보호체계의 부재

“이런 어린 아이가 갈 수 있는 시설이 없어요. 대기를 하려면 수개월 걸릴 수도 있어요.”

A시설을 찾기 전 주민센터 공무원이 한 보호자에게 건넨 말이다. A시설 폐쇄 이후 구청은 보호자에게 24시간 어린이집을 권유하기도 했다. 미신고시설에 유입되는 아동 대부분은 영유아기에 속한다. A시설을 거쳐 간 10명이 넘는 아동은 모두 생후 24개월 미만의 아동이었다.

2020년 기준 ‘취학 전’ 연령의 보호대상아동 발생 및 보호조치 현황¹³⁾을 보호대상아동 전체 집단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¹⁴⁾

시점	보호대상 아동 발생수	귀가 및 연고자 인도	보호대상아동의 발생원인										
			소계	유기	미혼부모·혼외자	미아	비행·기출·부랑	학대	부모빈곤·실직	부모사망	부모질병	부모교정 시설입소	부모이혼 등
2020 ¹⁵⁾ *전체	5,053	933	4,120	169	466	11	468	1,766	181	279	75	166	539
2020 *취학 전 (비율,%)			1,365 (33.13)	150 (88.76)	406 (87.12)	6 (54.55)	13 (2.78)	503 (28.48)	87 (48.06)	29 (10.39)	19 (25.33)	50 (30.12)	102 (18.92)

‘귀가 및 연고자 인도’를 제외한 보호대상아동 인원수를 살펴보면, 취학 전 연령이 33.13%(1,365명:4,120명)로 보호대상아동 전체에서 약 1/3 가량을 차지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취학 전 연령의 보호대상아동 1,365명 가운데 발생원인 별로 살펴보면, ‘학대’가 503명(36.85%), ‘미혼부모·혼외자’가 406명(29.74%)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유기’가 150명(10.99%), ‘부모이혼등’이 102명(7.47%)의 순이었다. 보호가 필요한 영유아의 경우 비학대 사유의 비중 또한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호대상아동의 발생원인 별로 보호대상아동 전체 연령 중 취학 전 연령이 차지하

12) 「영유아보육법」상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13) 출처: 신현영 의원실

14) 아래 두 개의 표는 신현영 의원실 자료와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국가통계포털)를 통해 발제자가 직접 작성한 것이다.

15) 국가통계포털,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TX_117341138&conn_path=I2 (2021. 8. 2. 확인)

는 비율을 살펴보았다. 그 비중이 큰 순서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발생원인 가운데 ‘유기’와 ‘미혼부모·혼외자’ 사유가 압도적으로 많고, ‘미아’나 ‘부모빈곤·실직’, ‘부모교정시설 입소’, ‘학대’, ‘부모질병’ 사유의 비중도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유기: 88.76% (150명:169명=취학 전 연령:보호대상아동 전체)
- 미혼부모·혼외자: 87.12% (406명:466명)
- 미아: 54.55% (6명:11명)
- 부모빈곤·실직: 48.06% (87명:181명)
- 부모교정시설 입소: 30.12% (50명:166명)
- 학대: 28.48% (503명: 1,766명)
- 부모질병: 25.33% (19명:75명)
- 부모이혼등: 18.92%(102명:539명)
- 부모사망: 10.39% (29명:279명)
- 비행·가출·부랑: 2.78% (13명:458명)

연도	보호 대상 아동 발생수	귀가 및 연고자 인도	보호대상아동의 조치내용													
			소계	시설입소									가정보호			
				소계	양육 시설	일시 보호 시설	장애 아동 시설	자립 지원 시설	보호 치료 시설	공동 생활 가정	기타	소계	소년 소녀 가정	입양	가정 위탁	입양전 위탁
2020 ¹⁶⁾ *전체	5,053	933	4,120	2,727	1,133	343	-	20	451	712	68	1,393	-	88	1,068	237
2020 *취학 전 (비율,%)			1,365 (33.13)	803 (29.45)	495 (43.69)	143 (41.69)	-	0 (0)	1 (0.22)	149 (20.93)	15 (22.06)	562 (40.34)	-	86 (97.73)	239 (22.38)	237 (100)

보호대상아동의 조치내용을 살펴보면, 취학 전 보호대상아동의 가정보호 비율이 전체 보호대상아동의 가정보호 비율에 비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취학 전 연령의 아동 또한 시설보호 비율이 약 60%에 달하는 현실도 직시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16) 상동

는, 전체 보호대상아동의 시설입소 비중은 66.19%(2,727명:4,120명), 가정보호는 33.81% (1,393명:4,120명)인 것에 비해, 취학 전 보호대상아동의 경우 시설입소 비율이 58.83% (803명:1,365명), 가정보호는 41.17%(562명:1,393명)에 달했다.

취학 전 보호대상아동 1,365명에 대한 각 보호조치의 비중을 살펴보면, ‘양육시설’이 495명(36.26%)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가정위탁’이 239명(17.51%), ‘입양전위탁’이 237명(17.36%), ‘공동생활가정’이 149명(10.92%), ‘일시보호시설’ 143명(10.48%)의 순이었다. 또한, 보호조치내용 별로 보호대상아동 전체 연령 중 취학 전 연령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순서대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았다. (입양을 제외하고는) 취학 전 아동에 대한 양육시설(43.69%)과 일시보호시설(41.69%)의 비중이 여전히 크고 가정위탁의 비율이 22%로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이는 영유아의 특성과 맥락을 고려한 보호조치가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시설보호 중심의 아동보호체계가 영유아에게도 운용되고 있다는 점을 여실히 드러낸다.

- 입양전위탁: 100% (237명:237명=취학 전 연령:보호대상아동 전체)
- 입양: 97.73% (86명:88명)
- 양육시설: 43.69% (495명:1,133명)
- 일시보호시설: 41.69% (143명:343명)
- 가정위탁: 22.38% (239명:1,068명)
- 기타: 22.06% (15명:68명)
- 공동생활가정: 20.93% (149명:712명)
- 보호치료시설: 0.22% (1명:451명)
- 자립지원시설: 0% (0명:20명)

유아기는 아동권리의 실현을 위한 결정적인 시기이다. 유아는 일생동안 가장 급속한 성장과 변화를 경험하며, 그들의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복지에 해가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할 때 특히 위험에 취약하다.¹⁷⁾ 특히 부모나 기타의 양육자가 적절한 보호를 제공해 주지 못하는 경우에 더욱 위험해지며, 왜곡되거나 방해받는 발달에 더욱 취약하며

17) 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06. 9. 20. 채택, 일반논평 제7호 ‘영유아기 아동권리 이행’

어려움을 피하거나 이에 저항하는데 상대적으로 무력하고, 그들에게 보호를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의존적이다.¹⁸⁾ 유기와 학대의 결과는 매우 어린 유아의 경우 뇌의 성숙과정에 있어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치는 것을 포함해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유아는 사회적인 활동, 경험과 학습을 위한 시간과 공간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양육, 정서적인 보살핌과 민감한 지도를 특별히 필요로 한다.¹⁹⁾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빈곤 아동, 혹은 기타의 이유로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 아동,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 등을 특히 가장 취약한 유아 집단으로 정하고,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²⁰⁾ 시설적 혹은 다른 형태의 장기양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수를 최소화하고, 유아기의 특성이 법률과 정책 내에서 잘 계획되고 이행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제, 영유아기 특성을 고려한 아동보호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작성하여 배포한 ‘2020 아동분야 사업안내 1’에 따르면, “2세 미만 보호대상아동은 가정위탁 우선 배치 노력”이라고 기재되어 있다.²¹⁾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취학 전 아동에게도 여전히 시설 중심의 보호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2020. 기준 가정위탁 보호조치를 받은 보호대상 아동 가운데 취학 전 연령의 비율은 22%에 불과했다. A시설에서 보호되던 아동 모두 생후만 2세 미만이었지만, 시설 폐쇄조치 이후 구청은 그 어떤 아동에게도 가정위탁을 우선적으로 배치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당장 영유아가 갈 곳이 없다는 이유로 24시간 어린이집을 제안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2020. 5. 22. 가정위탁 보호율을 높이기 위해 6대 과제 중점 추진을 발표했다.²²⁾ 이 보도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베이비박스 유기아동에게 시설보호보다는 전문적인 가정보호가 최우선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아동 배치에 대한 책임 강화”라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6대 과제별 이행 현황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작성한 자료²³⁾는 다음과 같다.

18) 상동

19) 상동

20) 상동

21) 보건복지부, ‘2020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1’, 5쪽.

22)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4637

23) 출처: 신현영 의원실

□ 가정위탁 6대 과제 세부 이행현황

연번	과제내용	이행현황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위탁부모 발굴·홍보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필요아동에 대한 가정위탁 보호 활성화를 위해 일반위탁부모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부모 발굴 및 홍보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 일반위탁부모 264명('19) → 467명('20), 위기가동 보호가정(일시위탁가정) 95개 선정('21.3~6) - 공익광고(라디오 CBS, TV 등, '20.9~10./'21.3~4.), 다큐멘터리(EBS, '20.10.1.), 포털 키워드 및 배너광고('20.11./'21.3~4.), 인포그래픽 영상 배포('20.7.), 웹포스터·리플렛 배포('21.3.) 등 • 위탁부모 교육시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보수교육시간 4시간('19) → 5시간('20), 전문위탁 양성교육 20시간 신설('20) * (지자체 합동평가) '21년부터 위탁부모 보수교육 이수 목표달성을 평가 추진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가정 지원 현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용품구입비 기준 신설 - 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연령별 차등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기준 신설('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책정 위탁가정 대상 1회 100만원 지원 • 양육보조금 지원기준 인상 및 연령별 차등화('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20만원('19) → 연령별 월 30~50만원('20, 만7세 미만 30만원, 만7세~만12세 40만원, 만13세 이상 50만원) * (지자체 합동평가) '21년부터 양육보조금 지급 목표달성을 평가 추진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정위탁제도 도입 및 전국적 확대·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정위탁제도 법제화 추진 및 지원기준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정위탁 법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복지법」 개정('20.12.)하여 가정위탁 유형 규정 근거 마련, 시행령에서 전문가정위탁을 위탁유형으로 규정('21.6.30.시행) •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기준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위탁가정 대상 월 40만원('19)→월 100만원('20)으로 인상 * '21.4월부터 확대에 의해 분리된 아동(0~2세)을 일시보호하는 보호가정에 전문아동보호비, 아동용품구입비 국비 지원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지원서비스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견인제도 활성화 - 법률구조지원 강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연계, 법률심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권자 소재불명 시 후견인 선임을 위해 가정위탁지원센터장이 지자체에 친권제한 청구를 요청하도록 의무화('21년 사업지침 반영) •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연계한 미성년후견인 선임 법률구조지원 지속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용 건수 : 3건('16)→2건('17)→7건('18) → 18건('19)→17건('20)→25건 진행중('21)

연번	과제내용	이행현황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가정(부모) 복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아동-부모 간 면접교섭권을 형제자매 등 가족까지 확대 - 친가정 복귀 프로그램 강화 및 친부모-아동 교류 프로그램, 운영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복지법」 개정('20.12.)하여 지자체의 아동과 가족간 면접교섭 지원근거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위법령에서 방법·절차 규정('21.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협력하여 원가정 회복지원 시범사업 운영('20.4~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부모상담·교육·면접교섭·관계개선·정보제공·사후관리 등 38명(16가정) 지원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위탁 인프라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위탁지원센터 분소 설치 추진 - 부족한 인력 충원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남동부 가정위탁지원센터 신규 설치('20.10.)

이와 같은 노력에 더해, 보건복지부는 영유아 가정위탁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원인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현장에서 보호가 필요한 영유아가 발생했을 때 가정위탁 보호조치로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이행사항으로 충분한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비학대사유로 보호대상아동으로 진입하는 영유아를 위한 보호조치에 대한 개선 또한 함께 고민되어야 한다.

마. 원가정양육 원칙 이행을 위한 지원체계 부재

영유아기의 특성을 고려할 때, 영유아기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날 권리 혹은 원가정양육원칙을 이행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유아는 그들의 부모나 양육자와의 강한 감정적인 유대를 형성하며, 그들로부터 개성과 능력의 성장을 존중하는 방식의 양육, 보살핌, 지도와 보호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²⁴⁾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유아가 특히 부모와의 분리에 취약하며 부모에 대한 신체적인 의존과 정서적 애착이 강하며 분리상황을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사국에게 아동 최상의 이익이 아니라면 아동을 부모와 분리시키지 않을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당사국이 부모가 그들의 아동에 대한 책임을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유아의 복지가 위협에 처할 수 있는 곳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²⁵⁾

24) 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06. 9. 20. 채택, 일반논평 제7호 '영유아기 아동권리 이행',

25) 상동

원가정양육원칙은 이미 아동복지법(제4조제3항)과 유엔아동권리협약(제7조, 제9조 등) 등에서 천명하고 있는 아동권리 실현의 핵심 원칙이다. 하지만 현재 원가정지원체계는 아동보호체계와 동떨어져 작동되고 있다. 국가는 부모를 상담하는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원가정양육원칙을 현장에서 실천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A시설을 찾아가기 전 주민센터 등을 찾았던 보호자에게 공공은 “정말 아이를 키울 수 없어요?”를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오기까지 어떠한 어려움을 겪었는지 먼저 살피고, 아이를 양육하는 데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한다. 현재 처한 양육위기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가능한 지원방안을 안내하며, 어려움을 해결하는 과정에도 함께 해야 한다.

5. 결론

미신고 아동복지시설 중 A시설은 세상에 드러난 극히 일부 사례에 불과하다. A시설의 경우 시민단체의 고발 직후 폐쇄되었지만, 여전히 규모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미신고 아동복지시설이 국가의 침묵 속에 오늘도 운영되고 있다. 많은 아동들이 국가의 관리·감독의 손길이 닿지 않는 미신고시설에서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내고 있다. 대부분 영유아이기 때문에 설령 위험에 처하더라도 그 위험상황에 저항하기 어렵고, 학대 등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시설 종사자라 하더라도 유일한 현재 나의 양육자이기에 별다른 대안 없이 그에게 의존한다.

미신고아동복지시설의 문제는 아동보호체계의 ‘공백’, 채울 수 없는 공백이 아니다. 더 이상 아동들이 미신고시설로 유입되지 않기 위해 공공의 아동보호체계는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아동 최상의 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고려할 때, 미신고시설이 어렵다면 이미 신고된 시설에 아동을 보호하는 방안 혹은 미신고시설을 단순히 ‘양성화’하는 방안은 선택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궁극적으로는, 비학대사유로 보호대상아동으로 진입하지 않도록 위기 임신·출산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원가정에 대한 양육지원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동시에 여전히 존재하는 비학대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도 특성에 맞는 보호체계가 작동되고, 영유아의 맥락을 고려한 아동보호체계 또한 마련되어야 한다. 위기상황에 처한 양육자가 공공에 먼저 문을 두드리고, 국가는 손을 내민 아동과 가정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아동보호체계와 원가정지원체계가 통합적·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날 수 있어야 한다.

미신고 아동복지시설 문제로 바라본
아동보호체계의 공백 국회 토론회

발제 3

국제인권규범에 비추어 본 불법 미신고시설의 아동권리 침해

김희진 사무국장 (국제아동인권센터)



국제인권규범에 비추어 본 불법 미신고시설의 아동권리 침해

김희진 사무국장 (국제아동인권센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제3조 ① 공공·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입법기관 등은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 아동 최상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당사국은 아동의 부모, 법정대리인 및 기타 아동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는 자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하여 아동의 안녕에 필요한 보호와 돌봄을 보장하고, 이를 위해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당사국은 아동 보호나 돌봄에 책임이 있는 기관, 서비스, 시설이 특히 안전 및 위생의 영역에서, 적합한 관리 감독은 물론 그들의 직원 수나 적합성에 관련하여 관계당국이 설정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20조 ①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가정환경을 박탈당했거나 가정 환경에 남아 있는 것이 아동 최상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아동은 국가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당사국은 국내법에 따라 이러한 아동을 위한 대안양육을 보장해야 한다.

③ 이러한 보호는 위탁양육, 이슬람법의 카팔라, 입양, 필요한 경우 적합한 아동보호시설에서의 양육을 포함한다. 대안양육을 모색할 때는 아동양육이 계속될 수 있는가 하는 점과 아동의 인종적·종교적·문화적 및 언어적 배경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제25조 당사국은 돌봄, 보호,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목적으로 관계당국의 배치 결정에 따른 아동의 처우 및 결정과 관련한 모든 상황을 정기적으로 심사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아동권리협약’ 또는 ‘협약’이라 함)은 보편적 기준을 달성한 국제인권조약으로서 협약을 비준한 당사국은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아동권리 이행의 준거이자 지침이 되고 있다. 이러한 아동권리협약은 특히 가정환경상실아동의 대안양육에 있어 아동 최상의 이익 관점에서 시설 운영의 적정한 기준과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다만 시설보호는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아동의 시설배치 결정을 정기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동의 원가정이 지지받고, 그 가정에서 자라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며, 대안양육이 필요한 때에도 가정형 돌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부득이한 경우 시설보호가 필요한 때에는 역량을 갖춘 공적 개입과 모니터링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그렇다면, 아동권리협약 자체로 “미신고시설”의 존재는 당사국의 의무위반이다. 국가가 그 존재를 알 수 없는 미신고시설은 적절한 돌봄을 제공하기에 충분한 인적·물적 자원을 갖추었는지 점검할 수 없다. 국가가 그 존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출생등록과 교육, 양질의 삶의 질을 포함한 아동권리 보장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정기적인 모니터링도 불가하다. 국가가 그 존재를 알 수 없다는 것은 그 시설에 머무는 아동의 존재도 알 수 없다는 결과로 이어진다. 인신매매와 불법입양, 방임과 학대, 극단적인 경우 사망에 이를 가능성도 예방은 커녕 사후개입도 현저히 어려워진다. 국가의 관리 밖에 있는 미신고시설은 국가의 관심 밖에 놓여질 수밖에 없다. 보호자의 돌봄 공백이 있는 아동은 “사실상 국가가 보호자인 아이”인데, 국가가 아동을 방치하는 결과로 나타난다. 이하에서는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가정환경상실아동과 시설보호아동의 권리를 설명한 일반논평을 살펴보고, 미신고시설의 위법성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1) 가정환경상실아동의 보호주체: 국가의 책무

- 보살핌 장소(care setting)의 정의: 아동은 또한, 보살핌 장소 안에서 신체적인 감독을 받지 않을 때에도, 예컨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놀거나 인터넷 검색을 할 때에도 1차적으로 또는 대리로 보살피는 사람의 “보살핌을 받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통상적인 보살핌 장소는 가정, 학교와 여타의 교육시설, 유아 보살핌 장소, 방과후 돌봄센터, 여가활동·스포츠·문화·오락시설, 종교시설과 기도장소를 포함한다. 의료·재활·보살핌 시설, 직장, 사법장소에서 아동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지키고 또한 보호·복지·발달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전문가 또는 국가행위자의 보호를 받는다. 아동의 보호, 안녕, 발달이 또한 확보되는 세 번째 유형의 장소는 마을, 지역사회, 분쟁 및/또는 자연재해에 의한 난민·국내 난민 수용소 또는 거류지이다(CRC/C/GC/13, para. 34).
- 1차적으로 또는 대리로 보살피는 아동이 없는 아동: 제19조는 1차적으로 또는 대리로 보살피는 사람, 또는 아동의 보호와 복지를 위임받은 여타 사람이 없는 아동, 예컨대

아동가장, 길거리 아동, 부모가 이주를 한 아동 또는 출생국가 밖에서 동반자가 없는 아동에게도 적용된다. 이 아동들이 입양가정, 대용(代用) 수용시설 또는 NGO 시설같은 신체적 보살핌 장소에 있지 않은 때조차도, 당사국은 사실상의 보살피는 사람 또는 “아동의 보살피게 된” 사람으로서의 책임을 질 의무가 있다. 당사국은 “아동의 안녕에 필요한 보호와 보살핌을 보장하고”(제3조 2항), “일시적으로 또는 항구적으로 가정환경을 박탈당한 아동”에게 “대안적 보살핌을 보장할”(제20조) 의무가 있다. 가정과 유사한 형태의 보살핌 시설-이 시설은 아동이 폭력에 노출될 위험과 관련하여 세밀히 검증을 받아야 함-처럼, 그러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다른 방법들도 있다 (CRC/C/GC/19, para. 35).

2) 시설보호아동의 취약성: 공적 개입과 모니터링의 필요성

- 비록 시설 내의 돌봄이 아동의 발달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당사국들은 공동체 내의 가족 기반 돌봄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 시설 돌봄이 HIV/AIDS에 의해 고아가 된 아동들을 보살피는 데 임시적 역할을 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위원회는 아동에 위한 모든 시설 돌봄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작용해야 하며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모든 형태의 학대와 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충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견해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아동의 특별한 보호와 지원에 대한 권리를 보장함에 있어, 그리고 협약의 제3조, 제20조 및 제25조에 따라 이러한 시설들이 특별한 돌봄 기준을 만족시키고, 법적 보호를 준수할 것을 보장하는 엄격한 조치들이 필요하다. 당사국들은 이러한 시설에서 아동이 보낼 수 있는 기간의 제한을 설정해야 한다는 점과 HIV/AIDS에 감염되거나 영향을 받는 것에 상관없이 이러한 기관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아동이 성공적으로 그들의 공동체에 재통합되도록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함을 상기한다. (CRC/C/GC/3, para. 35)
- 연구 결과 낮은 질의 시설 양육은 건강한 신체적 및 심리적 발달을 촉진하지 못하며 장기적인 사회적 적응에, 특히 5세 이하의 아동뿐만 아니라 3세 이하의 아동의 경우에는 심각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대안 양육 필요한 경우에, 가족 기반의 혹은 가족과 유사한 돌봄에의 조기 배치가 유아에게는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경향이 있다(CRC/C/GC/7, para. 36). 일단 아동에 관한 폭력에 대하여 형법이 완전히 적용

되면, 아동은 그들이 어디에 있건, 범죄자가 누구이든 간에 체벌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그러나 위원회의 입장은 체벌에 대한 전통적인 용인을 고려해볼 때, 적용 가능한 분야별 법률-예를 들어 가족법, 교육법, 모든 형태의 대안 돌봄과 사법 체제에 대한 법, 고용법-이 관련 상황에서 폭력의 사용을 명백히 금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더욱이 만약 전문가 윤리강령 및 교사, 양육자, 기타 사람들에 대한 지침, 그리고 또한 시설의 규칙이나 설립문서가 체벌 및 그 밖의 잔혹하거나 굴욕적인 형태의 처벌의 불법성을 강조한다면 더욱 유용할 것이다(CRC/C/GC/7, para. 35).

- 모든 체벌 혹은 그 밖의 잔혹하거나 굴욕적인 처벌의 금지 및 이러한 처벌이 가해진 경우 부과될 제재가 아동 및 모든 환경에서 아동과 함께 혹은 아동을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널리 알려져야 한다. 훈육 체제 및 아동에 대한 처우의 감독은 협약에서 요구하고 있는 모든 시설과 장소에 대한 지속적 감독의 일부여야 한다. 모든 그러한 장소에 있는 아동과 그들의 대리인들은 필요하다면 법적 및 기타 조력을 받아 아동 인지적 조언, 옹호 및 진정절차와 궁극적으로는 법원에 대한 즉각적이며 비밀유지가 되는 접근권을 가져야 한다. 시설에서는 모든 폭력사건에 대한 보고와 검토가 요구되어야 한다(CRC/C/GC/8, para. 43).
- 위원회는 시설에 수용된 장애아동의 숫자가 매우 많다는 사실, 그리고 많은 나라에서 시설수용이 아동의 위탁 방법으로 선호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 자주 우려를 표명했다. 보살핌의 목적이 교육이든 치료이든 재활이든, 시설에서 제공되는 보살핌의 질적 수준은 공인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또는 있더라도 그 기준이 준수·감시되지 않기 때문에, 장애아동의 보살핌에 필요한 기준에 크게 미달하기 일췌이다. 시설은 또한 장애아동이 정신적, 신체적, 성적 또는 여타 형태의 학대, 그리고 방치와 박대에 더 취약한 특별한 장소이기도 하다. 따라서 위원회는 당사국이 극히 필요한 경우에 한 해, 그리고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마지막 수단으로서만 시설위탁 방법을 사용할 것을 촉구한다. 위원회는 또한 시설위탁이 단지 아동의 자유, 특히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할 것을 권고한다. 아울러 당사국은 기존의 시설, 특히 아동의 권리 및 요구와 관련하여 설치된 소규모 주거용 보살핌 시설의 변형, 그리고 시설에서의 보살핌을 위한 국가적 기준의 개발 및 그 기준의 효과적인 준수를 보장하는 엄격한 심사·감시 절차의 수립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CRC/C/GC/9, para. 47).
- 각국은 법률, 규제 및 정책 지침을 통해, 배정 관련 결정, 양육 계획의 개발 및 검토,

가족 방문시에 아동의 견해를 구하고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¹⁾ 각국은 시설 입소를 최후의 수단으로 제한하는 확립된 국제 규정(international parameters)을 존중하고,²⁾ 아동이 불필요하게 대안 양육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며, 대안 양육이 제공되는 경우 아동의 권리 및 최선의 이익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건하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³⁾ 각국은 국가 및 시민사회가 운영하는 보호소 및 시설이 안전하고 양질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CRC/C/GC/21, para. 45)

- 아동이 자신의 양육 및 보호에 대한 권리가 충족되지 못한 결과 거리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미 거리 상황에 처해 있는 아동들을 위해서, 국가 및 비국가 서비스의 질을 확립, 유지 및 감독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국은 양질의 권리 존중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사회 단체들도 그렇게 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거리 상황의 아동을 위한 비국가 기관, 서비스 및 시설에 대해 국가는 지원, 자원 제공, 인증, 규제 및 감독하여야 한다. 그러한 서비스와 관련된 인력은 18항에 의하여 훈련을 받아야 한다. (CRC/C/GC/21, para. 47)
- 대규모의 장기 시설에서 지내는 청소년이 결과가 좋지 않다는 상당한 증거가 존재하며 위탁가정이나 소규모 집단 양육과 같은 그 밖의 형태의 대안적 돌봄을 받는 청소년도 비록 그 정도는 약하지만 마찬가지이다. 이들은 교육 성취도가 낮고 사회 복지에 의존하며 노숙, 투옥, 원치 않는 임신, 조기 부모, 약물 남용, 자해 및 자살 위험이 높다. 대안적 돌봄을 받는 청소년은 일반적으로 16-18 세가 되면 떠나야 하며, 성적 학대 및 착취, 인신 매매 및 폭력에 취약하며 이는 지원 시스템이나 보호 장치가 부족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과 역량을 습득할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장애가 있는 청소년들은 종종 공동체 생활의 기회가 거부되고 계속해서 그들의 권리를 침해당할 위험이 높은 성인 기관으로 옮겨진다(CRC/C/GC/20, para. 52).

3) 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확보

- 폭력은 개인, 가족, 공동체와 사회적 요소들 간의 복잡한 상호 작용으로부터 기인한다. 가정이 없거나, 시설에서 생활하거나, 범죄조직에 속해있거나 혹은 소년병으로 징용되

1) CRC/C/GC/12, para. 54; CRC/C/GC/6, para. 40; CRC/C/GC/7, para. 36(b)

2) CRC/C/GC/3, para. 35.

3) 유엔총회 결의안 아동의 대안양육에 관한 지침 (A/RES/64/142) 부속서

있던 이들처럼 취약한 청소년들은 특히 기관적인 폭력과 개인간의 폭력 모두에 노출된다. 협약 제19조에 따라 당사국들은 (a) 청소년을 위한 공공 및 민간 시설(학교, 장애 청소년을 위한 시설, 소년원 등)에 대한 입법 및 행정적 조치와 시설에 있는 아동을 담당하거나 경찰과 같이 업무를 통해 아동과 접촉하는 이들에 대한 훈련 및 모니터링을 통한 청소년에 대한 제도적 폭력 및 (b) 적절한 육아와 초기 아동기의 사회적 및 교육적 발달을 위한 기회의 지지, 비폭력적인 문화적 규범과 가치의 육성(협약 제39조에서 예견된 바와 같이), 무기의 엄격한 통제 및 알콜과 약물에 대한 접근의 제한 등을 통하여 청소년간의 개인적인 폭력을 예방하고 퇴치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CRC/C/GC/4, para. 23).

- 위원회는 (협약) 이행과정에 관련된 모든 사람-정부 공무원, 국회의원 및 사법부의 구성원-과 아동을 위해 그리고 아동과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훈련과 역량 구축을 발전시킬 국가의 의무를 강조한다. 여기에는 공동체 및 종교 지도자, 교사, 사회복지사 및 시설이나 구금 장소에서 아동과 함께 근무하는 사람을 포함한 기타 전문가, 경찰과 평화유지군을 포함한 무장 군대, 언론종사자 및 기타의 직업군이 포함된다. 훈련은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필요-최초 훈련 및 재훈련-가 있다. 훈련의 목적은 인권의 주체로서 아동의 지위를 강조하고, 협약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높이며 모든 협약 규정에 대한 적극적인 존중을 장려하는 것이다(CRC/C/GC/5, para. 53).
- 초기 아동기의 아동권리이행은 유아가 가족, 학교 및 공동체 내에서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게 되면서 따르는 아동 자신이 직면하는 도전뿐만 아니라 아동에 대한 책임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전이 된다. 당사국은 아동과 함께 그리고 아동을 위해 일하는 모든 전문가, 특히 국회의원, 판사, 치안판사, 법률가, 법집행 공무원, 공무원, 아동 시설 및 아동 구금 시설의 직원, 교사, 보건종사자, 사회복지사 및 지역 지도자뿐만 아니라 아동과 그들의 부모를 위한 체계적인 아동권리 훈련을 진행하길 장려된다 (CRC/C/GC/7, para. 41).
- 협약 12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당사국들은 (...중략...) 변호사, 판사, 경찰, 사회복지사, 지역 활동가, 심리학자, 아동을 돌보는 사람, 보호시설 관리자와 교도관, 교사, 의사, 간호사 및 다른 의료 전문가, 공무원 및 공직자, 난민 관련 종사자 및 전통적 지역사회 지도자 등 아동과 함께 또는 아동을 위해 일하는 모든 전문가에게 교육훈련을 제공한다(CRC/C/GC/12, para/ 49). 아동이 다른 아동 및 성인과 학습하고 놀

고 생활하는 시설에서 인권이 실천되고 있을 경우에만 인권 교육이 아동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아동의 태도를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기관에서는 아동의 의사 표현 권리가 아동의 철저한 검증 하에 놓이게 된다(CRC/C/GC/12, para/ 108).

- 당사국의 교육적 조치는 아동폭력을 용인하고 조장하는 태도, 전통, 관습, 관행을 다루어야 하며, 대중매체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폭력에 관한 공개적 논의를 촉진해야 한다. 또한 교육적 조치는 아동의 생활기능과 지식 및 참여를 지원하고, 보살피는 사람 및 아동과 접촉하는 전문가의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아동과 함께 일하거나 아동을 상대하는 모든 전문가와 비전문가(교육제도의 모든 수준에서 종사하는 교사,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사 및 여타 건강 전문가, 심리학자, 변호사, 판사, 경찰, 보호 관찰관 및 교도소 관리, 저널리스트, 지역사회 봉사자, 주거시설에서 아동을 보살피는 사람, 공무원과 공직자, 수용 시설 관리자, 전통적·종교적 지도자 포함)를 위하여, 제19 조와 이것의 실제 적용에 대한 아동권리 접근법에 관한 초기·재직 중·역할별 훈련(필요한 경우, 부문간 훈련 포함)을 제공하고, 그러한 훈련을 규제하고 인정하기 위해 교육·훈련기관 및 전문가 단체와 더불어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인증제도를 개발해야 한다 (CRC/C/GC/19 para. 44).

4) 시설보호아동의 최상의 이익

- 많은 아동이 거주 시설 및 학교, 병원, 구급 센터 및 난민 센터를 포함한 기관에서 아동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내게 되며, 이러한 곳에서의 놀이, 오락활동 및 문화적 예술적 생활에 대한 참여의 기회를 제한되거나 거부되어 있다. 위원회는 국가가 아동의 비기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하지만 이 목표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국가는 모든 이러한 기관이 아동이 공동체 내 또래들과 함께 놀이를 하고, 게임, 신체적 활동, 문화적 및 예술적 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제공하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채택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의무적이거나 조직화된 활동으로 인해 제한되어서는 안되며, 아동이 자유롭게 놀이하고 오락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환경이 제공되어야 한다. 가능하다면 아동은 지역사회 내에서 이러한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상당 기간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은 적절한 문학, 간행물 및 인터넷에 대한 접근과, 이들이 이러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을 필

요로 한다. 기관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이 제31조에 의거한 그들의 권리를 실현하도록 보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시간, 적절한 공간, 적합한 자원 및 장비, 훈련되고 동기가 부여된 직원 및 전용 예산의 제공이 필요하다(CRC/C/GC/14, para. 51).

- 국가는 대안적 돌봄을 받는 청소년을 지원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투자해야 한다. 위탁 가정 및 소규모 가정에 대한 선호는 차별 문제를 해결하고, 청소년의 개인 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를 보장하며, 그들의 교육을 지원하고,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실제 목소리를 내며, 여러 번의 이동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통해 보완되어야 한다. 국가는 기관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것이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되도록 보장하고 비밀이 유지되는 민원 메커니즘 및 사법에 대한 접근을 포함하여 기관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의 적절한 보호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국가는 또한 대안적 돌봄을 받는 청소년들의 독립성을 향상시키고 삶의 기회를 개선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들이 나이가 들면서 시설을 떠날 때 직면하는 특정 취약성과 불안정성에 대처해야 한다(CRC/C/GC/20, para. 53). 대안적 돌봄에서 벗어나는 청소년들은 아동의 대안양육에 관한 지침에 의거하여 전환 준비, 취업, 주택 및 심리적 지원에 대한 접근,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가족과의 재통합에 대한 참여 및 돌봄 후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얻는데 있어 지원을 받아야 한다(CRC/C/GC/20, para. 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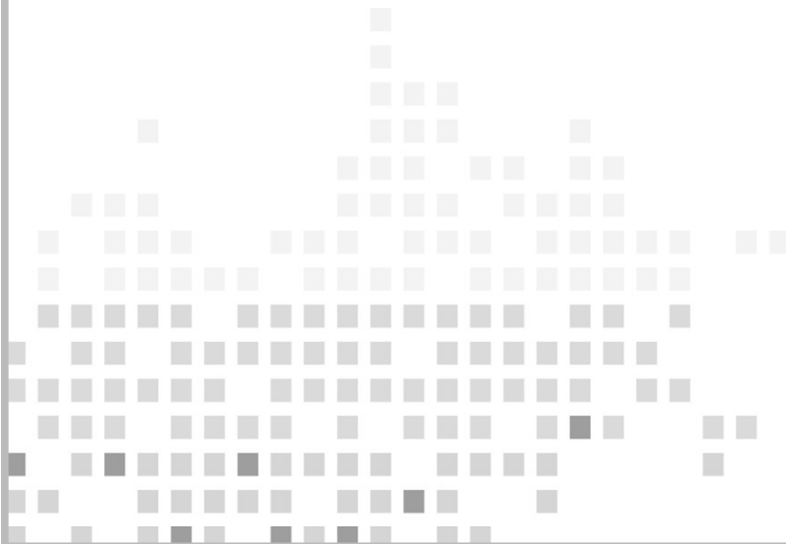
2019년, 유엔의 자유박탈에 대한 국제연구 전문가는 “많은 국가에서 아동이 일단 기관, 특히 국가가 정하지 않은 사설 기관(private institutions, which are often not State-regulated)”에 들어간 이후에는 쉽게 국가의 “관심 밖으로 사라지게 된다(children simply “drop off the radar” of those States)”고 지적하면서, 특히 미신고시설/미인가 기관은 아동에 대한 인권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였다. 미신고시설은 사실상 ‘불법적 또는 자의적으로 자유를 박탈하는 아동권리 침해’이며, 최후의 수단과 최단기간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 불법 미신고시설로 운영되는 베이비박스도 같은 맥락에서 문제를 찾아볼 수 있다. 위기가정과 유기아동에 대한 일차적 정보가 공공이 아닌 민간(정부의 위탁 운영이 아닌)으로 유입되는데, 민간이 특한 정보의 투명성과 진실성을 확인할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아동매매와 불법입양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는 ‘미신고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배제할 수 없다(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

의정서 제8조, 제9조).

“국가는 모든 시설에 대한 지도(map)를 만들고, 각 시설에 대한 독립적인 검토(review)를 실시하며, 대안적 보호를 제공하는 자가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을 충족하도록 등록, 허가, 규제 및 감독 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는 아동의 자유박탈에 대한 독립전문가의 권고를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원가정 보호와 가정기반의 보호조치를 실천하며, 아동을 중심에 둔 제도 개선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탈시설 정책에 앞서 시설 운영과 관리감독의 공공성 강화, 그로 인한 아동보호의 공적 책무를 강화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미신고 아동복지시설 문제로 바라본
아동보호체계의 공백 국회 토론회

토론문



‘아동’없는 아동공적 보호체계 문제점 및 국가 책무 강화 가능성

오진방(한국한부모연합 사무국장)

들어가는 말

양친구입양아동 사망사건 이후 대한민국 아동보호체계의 문제의 심각성은 계속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야의 입법만들기 경쟁만 계속되고 있다.(정인이 사건 이후 76개의 법안이 나왔으나 가결안건 21건) 한국한부모연합은 당사자 단체로 위기가정을 긴급하게 지원할 수 있는 지원체제 강화 및 시설중심의 지원정책이 아닌 지역사회 중심의 안전망 구축을 정책으로 내놓았다.(2021년 1월19일 토론회자료 중)

그리고 4월이 되어 서울 서초구 생명의샘교회가 운영하는 미신고시설 사건을 기사로 접했고 이는 바로 베이비박스 운영과 관련되어있었기 때문에 한부모와 미혼모단체들이 해오던 방식 즉 원가족보호 및 지원체제 강화 그리고 시설중심 정책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방식의 활동에 대한 변화는 없었다. 출생통보제 도입과 함께 보건복지부에서 보호출산정책 발표에 대해서도 아동 중심의 정책, 원가족과 분리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입장도 늘 한결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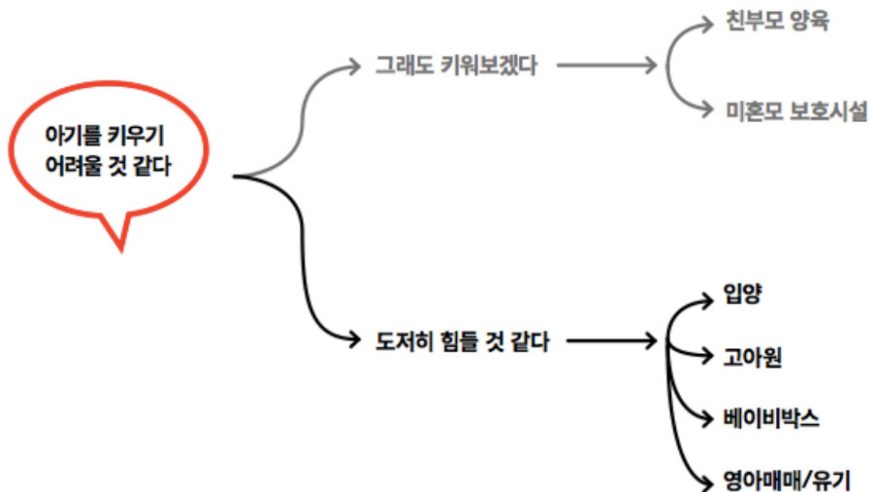
그러나 ‘특수한 상황에 놓인 여성’의 임신과 출산, 그리고 양육에 대해서는 하나의 제도, 보편성에 입각한 원칙으로는 절대 불가능 했다. 이제 베이비박스로 유입된 5년간의 정보를 분석한 <베이비박스 프로젝트 보고서>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8월 10일 발생한 인천아동사망사건과 미신고시설에 현재 아이를 맡기고 있는 ‘사례자A’씨의 사례를 보고자 한다.

1. 베이비박스를 찾는 원인은?

베이비박스를 찾는 원인 중 가장 많이 언급된 8가지 이유¹⁾

- 1) 340건 중 33.8% 경제적 어려움 : 빚, 신용불량자, 기초생활수급자, 일용직과 아르바이트로 생계유지가 어려웠고 미성년자, 군입대, 고등학생, 수감자 등 경제활동 불가능한 사회적 신분으로 20~25세 청년 빈곤과 연결
- 2) 거주불안정으로 물리적으로 살 곳이 불안정한 경우(sustainable housing)와 심적으로 안정된 가정(home)이 없는 경우
- 3) 24.5% 한부모로 여성 혼자 남겨진 경우 19.5%, 남성 혼자 남겨진 경우 5%, 미혼모는 97건
- 4) 가족의 부재로 부모의 보호나 지원을 받을 수 없거나 부모가 사망, 가정폭력과 학대로 떨어져 사는 경우 등 부모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 5) 임신과 피임에 대한 무지
- 6) 장애 및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 17%
- 7) 혼인관계가 아닌 원치 않은 임신 20.8%
- 8) 성폭력 등 원치 않는 성관계 임신 2%

아기를 키우기 어려운 부모들에게 어떤 옵션이 있을까?



1) <베이비박스 프로젝트 보고서>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 간 베이비박스에 들어 온 아기들과 그들의 부모의 정보를 분석한 데이터, 2020

김희진 국제아동인권센터 사무국장님 주장대로 “원가정 보호와 가정기반의 보호조치를 실천하며, 아동을 중심에 둔 제도 개선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탈시설 정책에 앞서 시설 운영과 관리감독의 공공성 강화, 그로 인한 아동보호의 공적 책무를 강화하는 노력”을 말씀하셨다. 강정은 변호사님 또한 가장 취약한 상황에 처한 영유아를 미신고시설로 향하게 하는 국가의 책임을 물었고 “학대·빈곤·유기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요보호아동에 대해 보호결정·관리·원가정 복귀 전 과정을 지자체 책임 하에 시행할 수 있도록 공적 보호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부는 미신고시설에서 보호되고 있는 아동에 대한 실태조차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미신고시설에 유입되고 있는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 또한 찾아볼 수 없다. 미신고시설 보호아동은 공공의 아동보호 체계와 철저히 분리되고 단절되어 있다고 진단할 수 있다.

아동을 양육할 준비가 될 동안 아동을 보호할만한 곳을 공공의 역할로 강화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그리고 ‘특수한 상황에 놓인 여성’들의 출산에 있어 원가족 마저 안전하지 않은 최근의 사례를 보도록 하자.

2. ‘특수한 상황에 놓인 여성’들에게 태어난 아동의 안전지대는?

8월8일 인천은 인천시와 인천경찰청이 아동학대 예방·대응 대책을 마련코자 10대 과제를 발표²⁾하였고 다음 날 3세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되었다.³⁾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기초자치단체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관리 대상이었다. 현행 제도상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보육시설 입소나 어린이집 등원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고 한다. 이처럼 고위험군 아동의 안부를 시시각각 확인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했지만⁴⁾ 이뤄지지 않았다. 한부모 당사자로서 그리고 한부모당사자 단체의 사무국장으로서 단체의 방향성을 모두 상실할 정도의 사건이었다. 원가족 보호정책도 양육비대지급제 등 경제적

2)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0808000089>

인천시·인천경찰청, 아동학대 예방·대응 대책 마련

3) <https://www.yna.co.kr/view/AKR20210810062200065?input=1179m>

집에 혼자 둔 3살 딸 사망...엄마에 아동학대살해죄 적용 검토

4) <https://news.v.daum.net/v/20210810135636163>

'어린이집만 갔더라도..' 집에서 혼자 숨진 3살 딸 비극, 연합뉴스

지원체계 강화도 이 가족에게는 모두 해당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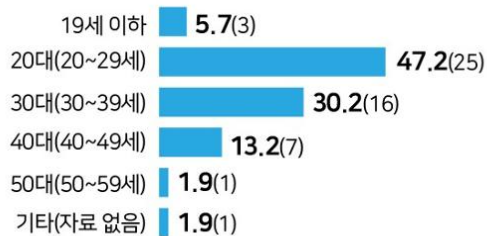
대부분 원가족으로부터 보호 받지 못했던 10대 시절이 있었고 성매매의 위험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다. 현재 이 사건에 대해 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올 4월부터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배치되었고 방임 의심의 이유로 월 1회 사례관리를 받았다고 했다. ‘특수한 상황에 놓인 여성’이라는 범주화는 매우 위험하다. 그러나 ‘특수한 상황에 놓인 여성’에게서 태어난 아동은 더욱 위험했다.

3. 가난해도, 부모의 유무를 떠나 아동의 잘 자랄 권리는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일까?

준비 안된 젊은 부모가 위험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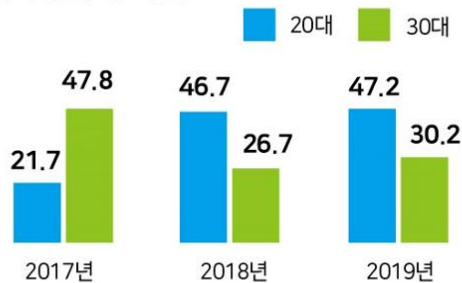
2019년 아동학대 사망사례 학대행위자 연령

(단위:%, 괄호안은 인원(수))



출처 : 보건복지부 '2019 아동학대 주요통계'(2020)

최근 3년 아동학대 사망사례 20·30대 학대행위자 비율



출처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8월 10일, 인터뷰를 통해 알게 된 A씨의 사례를 통해 아동권리에 입각한 최우선 정책을 찾아보도록 하자. 위기상황에 처한 양육자가 공공에 먼저 문을 두드릴 수 있어야한다. 그러나 보육원, 24시간 어린이집, 그룹홈, 가정위탁 중 현재 사례자A씨가 가장 안심하는 곳은 바로 미인가 그룹홈이다. 미인가시설을 두둔하려는 것이 아니다. 현재 인가를 받고 있는 시설 또한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다.

1. 북한이주여성과 아이를 임신(중국에 아이가 하나 있었고 낙태를 위해 하나센터의 도움으로 국립의료원에서 낙태를 하려고 했으나 병원에서 거절당함)
2. 출산 2개월 후 집을 나감(출생신고는 되어 있는 상태)
3. 서울시 아동복지 센터를 통해 구세군 후생원⁵⁾에 아이를 맡겼으나 아이 면회를 안시켜 줘서 데리고 나옴(4개월 지남)
4. 도봉구 소재 24시간 어린이집에 보냈는데 아이표정이 좋지 않고 요구사항(옷과 아이 먹을 것 등)이 많아 다시 데리고 옴
5. 현재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한 용인 성*원이란 곳에서 운영하는 광진구 그룹홈에 보내고 있음(수녀 두 분이 운영, 이름이 없음) 한달에 10만원 내시고 주말에 데리고 오심. 아이 표정이 밝아졌고 늘 밴드에 아이 사진 올리시고 만족도 높음
6. 주거복지센터 도움으로 현재 전세임대 거주. 기초수급으로 일을 해서 아이와 함께 살고 싶다고 함

아동보호체제와 원가정지원체제가 통합적·유기적으로 연계는 이 문제의 핵심일 것이다. “미신고시설은 적절한 관리·감독과 외부 개입이 부재한 결과, 시설보호아동의 인권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히 높다”고 지적했듯이, 한부모단체에 접수된 많은 사례들은 인가시설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한부모들의 주거 및 자립지원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는 전국 122개 한부모시설 중 2020년 현재 거주 인원은 정원의 60% 남짓한 3,099명이다(1,000여가구로 추측됨). 즉, 18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전체 한부모가구 38만 4천 가구의 0.3%에도 미치지 못하는 숫자가 시설에 거주 그런데도 예산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5) 1918년 설립으로 결식아아 23명으로 시작, 1981년 여아보육시설 혜천원과 통합, 2007년 구세군지역아동복지센터 설립, 2013년 신생아숙소 신설, 현재 62명의 아동과 41명의 직원이 근무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 사업예산 현황(2020)

(단위: 천원)

사업 내용	전체 예산	국비지원	서울시 예산
합계	64,811,480	25,106,847	39,704,633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지원	8,913,428		8,913,428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	2,043,082	1,021,541	1,021,541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지원	231,240	115,620	115,620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639,251	189,675	449,576
시설배치 사회복지요원 인력경비 지원	9,941	9,941	
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	1,352,058		1,352,058
한부모 매입임대주택거주지원	106,400	106,400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46,534,836	23,267,418	23,267,418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등 지원	4,163,740		4,163,740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817,504	396,252	421,252

(자료출처: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21년 1월, 한국한부모연합은 월간 위커스를 통해 ‘교회에 가겠다’는 서약서를 쓰고 모 자원에 입소한 이야기, 15년 동안 한부모가족복지시설과 운영재단 비리를 폭로한 사회복지사 이야기, 비리와 세습의 역사로 ‘특조위’까지 구성됐던 모자원 횡령 사건, 공무원의 제2의 인생을 영위하는 사회복지시설 등⁶⁾ 복지시설의 외주화 정책은 비리의 온상이 되었음을 밝힌바 있다. 모두 인가시설에서 일어난 일로 여성가족부의 가족정책이 시설을 서비스전달 체계로 삼아 가족지원과에서 담당, 전체 예산 중 지자체 예산을 관리 감독하는 서울시에서 관리와 감독이 되고 있지 않음을 다루었다. 시설문제는 주거를 할 수 있는 생활시설은 입소율이 줄어 기관수는 줄고 있지만 상담소와 복지센터 기능을 포함한 이용시설은 늘어나고 있다.⁷⁾

공공성이 강화되어도 아동을 최우선으로 두는 정책, 모두가 평등하다는 인권정책에 대한 이해와 변화가 없다면 비리는 계속 될 것이다.

6)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5643>

정부가 시설에 숨긴 0.3%의 한부모 여성들, 2021.01.02

7) 서울시의 경우 한부모가족 지원시설은 한부모복지시설 26개소, 미혼모, 부자거점기관 2개소, 한부모가족지원센터 1개소. 서울시 한부모+미혼자녀 가구는 385,241가구로 시설거주인원은 239세대(2020년 서울시 내부 자료)

4. 가족을 바라보는 교차적 관점 필요

한부모정책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민법을 기본으로 하는 가족정책의 변화는 더디고 가족은 더 이상 하나의 부서, 하나의 보편적 제도로는 더 이상 사각지대를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사례자 A씨의 경우 북한이주여성과 사실혼관계에서 아이가 태어났고 북한이주여성은 통일부 하나원을 통해 지원을 받고 있었지만 아이를 키우는 한국국적 미혼부는 아무런 혜택이 없었을 것이다. 한부모와 미혼모뿐만 아니라 남성한부모와 미혼부 증가는 여성가족부의 ‘여성’+‘가족’이라는 제한적 정책으로는 역부족이다. 늘어가는 북한이주여성들의 한부모와 미혼모는 통일부와 보건복지부에서 다루고 있지만 중도입국자녀 등 해결할 문제가 많다. 이주여성 미혼모 또한 출생신고 등 출입국관리소, 외교부 등 교차적 관점의 가족제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더욱 필요한 것은 아동 관점의 가족제도일 것이다. 당사자가 있어도 미혼모를 포함한 한부모정책은 늘 요보호정책으로서의 잔여적 복지정책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당사자도 없는 아동정책 사각지대는 현행 가족을 기본단위로 하는 복지제도와 시설중심의 정책으로는 막을 수 없다.

- ps

‘특수한 상황에 놓인 여성’과 ‘아동’이 처한 현실은 사회적 돌봄의 불평등, 청소년 빈곤, 주거빈곤, 경제성지적장애, 성매매 등 하나의 문제가 아니었다.⁸⁾

8) 전국청소년부모 가구원(복지로 사회복지통계 6월 현황) 가구원수 5,590명/ 가구수 2,797가구

실효적인 미신고시설 관리방안과 정책방향 - 장애인미신고시설 대응활동을 중심으로 -

김정하 활동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원고 미입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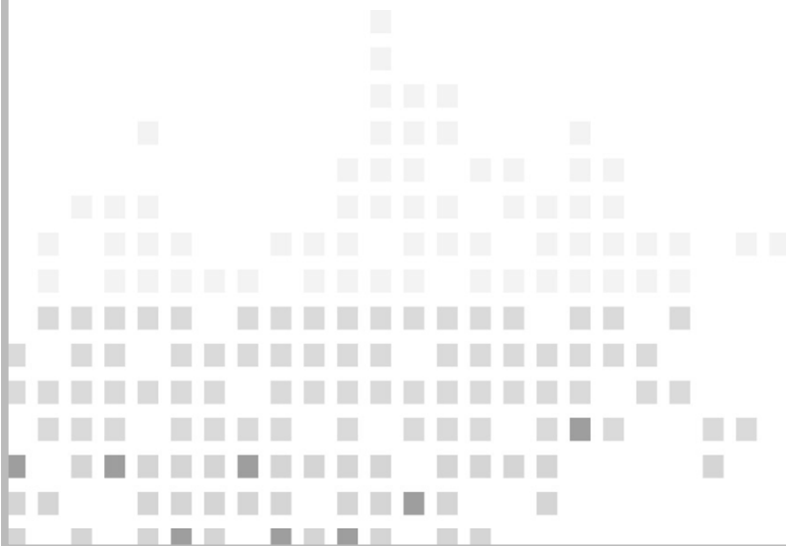
미신고시설과 아동보호체계

김진석 교수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원고 미입고

미신고 아동복지시설 문제로 바라본
아동보호체계의 공백 국회 토론회

참고자료



[참고자료 1] 5월 12일 서초구 생명의샘 교회 미신고 영유아 아동복지시설 학대 사건 고발 및 사건 해결을 위한 서초구청-서울시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5월12일(수) **보도자료** 국제아동인권센터, 사단법인 두루,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정치하는엄마들

[서초구 생명의샘 교회 미신고 영유아 아동복지시설 학대 사건 고발 및 사건 해결을 위한 서초구청-서울시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1년 5월 12일(수) 오전11시 / 서울지방경찰청 앞
- 주최 : 국제아동인권센터, 사단법인 두루, 움직이는청소년센터EXIT,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정치하는엄마들 (총 5개 단체)
- 순서
 - 마한얼 변호사 (사단법인 두루) : 고발 취지 및 내용
 - 황혜신 연구활동가 : 제보자 발언문 대독
 - 박유리 활동가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 아동학대 실태 고발 및 생명의샘 사건의 문제
 - 김정하 활동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 미신고 불법시설 문제와 탈시설 필요성
 - 장하나 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 시설 내 아동학대 사건 및 지자체 대응과정의 문제
 - 기자회견문 낭독

○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2021년 5월 4일 국제아동인권센터, 사단법인 두루, 정치하는엄마들,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등 아동·인권단체는 서초경찰서 앞에서 “서초구 생명의샘 교회 미신고 영유아 아동복지시설 학대 사건”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기자회견 후 서초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한 뒤, 사건 해결 촉구를 위한 조은희 서초구청장 면담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 생명의샘 교회의 서00 목사는 2019년 5월경부터 관할 지자체에 신고없이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해왔습니다. 생명의샘교회 홈페이지(<https://lifeofsam.modoo.at>)에 따르면 아동들 일부가 베이비박스를 통해 입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시설은 보육·복지 미자격자들을 고용하고, 신원이 미확인된 자원봉사자를 온라인에서 모집하여(<https://www.frip.co.kr/products/123368>) 만2세 미만 영유아 10여명의 보육을 유지해왔습니다.

○ 해당 미신고시설은 주거용 건물이 아닌 상업용 건물에서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습니다. 서00목사와 종사자들은 상습적으로 피해아동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했습니다. 서00목사와 종사자들은 상습적으로 피해아동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했습니다. 우는 아동을 달래기보다는 장시간 방치하거나, 셀프수유를 하게 하는 등 적절한 돌봄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제보에 따르면, 발달기에 맞는 적절한 식사가 제공되지 않았고, 아동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도 일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국가의 관리감독에서 벗어난 미신고시설에서 영유아기 아동은 학대와 방임에 방치되었습니다. 이 모든 장면이 장애인·노인 등의 미신고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상황과 동일합니다.

○ 해당 시설은 2020년 6월 시설 내 거주 아동이 질식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조사 등이 진행됐으나, 시설에 대한 관대함과 아동인권에 대한 국가기관의 낮은 감수성으로 시설의 불법성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2005년 유사한 사건인 ‘수경사 사건’ 이후 정부는 한 차례 지침 발표 외에 그 어떤 후속조치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아동 돌봄에 대한 책임을 가족에게만 과중하게 지우고 있는 현 제도와 정책 개선방안도, 늘어나고 있는 아동 유기의 감소 방안도 역시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로지 아동 유기를 권장하는 불법 시설은 모두에 의해 용인되고 있습니다. 출생률 감소로 입소 아동이 감소해 폐쇄 직전의 시설들은 불법 아동 유기시설로부터의 아동 유입으로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 사건을 통해 유기된 아동들이 불법 미신고시설로 유입되고 국가와 사회의 보호를 받지 못

하는 사각지대에 방치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19년 UN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가능한 한 모든 아동의 가정 기반 양육을 지원 및 촉진하고,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없는 아동을 위한 가정위탁의 질을 향상하고 확대하기 위한 적절한 인적, 재정적, 기술적 자원을 할당하며, 구체적인 탈시설 계획을 통해 시설보호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아동을 양육하기 어려워 국가의 지원을 요청하고 싶어도 파편적이고 분절적인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부모 개인의 역량에 달려있는 현실입니다. 아동 양육이 어려워 임시로 아동의 양육을 국가에 요청하고 싶어도 양육을 개인의 책임으로 보고 양육 회피를 의심하는 정부와 기관들의 모욕을 견뎌야 합니다. UN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처럼 시설이 아닌 가정위탁을 이용하고 싶어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동 1인의 위탁비용은 월 30~50만원으로 개인의 선의에만 기대는 제도입니다. 양육시설의 아동 1인당 시설 운영비가 월 300여만원인 것과 대조적입니다. 이마저도 시설입소에 비해 가정위탁은 훨씬 엄격한 절차가 병행되고 가정위탁자의 규모자체도 매우 적습니다.

○ 아동유기를 부모에게만 책임을 지울 수 없습니다. 유기된 아동이 시설에서 학대당한 것을 서00 목사의 문제만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아동이 유기되고 학대당하도록 방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문제입니다. 아동의 돌봄을 부모 개인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갈 곳 없는 아동을 위한 시설의 불가피성을 말할 것이 아니라 갈 곳 없는 아동이 없도록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번 생명의샘 교회의 아동학대 사건은 가해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과 함께 지자체와 국가기관의 책임 역시 물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해당시설을 방치하고 있었던 서초구청은 이 사건에 대해 우선적으로 책임지고 피해아동의 신속한 구조와 안전한 보호, 피해아동가족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아동 지원 시 물리적 보호와 함께 학대피해에 대한 의료·심리적 진단과 치료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피해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은 해당 문제시설이 있는 서초구청의 책임 아래 진행되어야 합니다.

○ 본 단체들은 본 사건이 명백한 해결이 이뤄질 때까지 사건을 대응하고 피해자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귀 언론사의 지속적인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붙임자료 1] 기자회견문 1부.

[붙임자료 2] 생명의샘 교회 미신고 영유아 아동복지시설 아동학대 사건 해결을 위한 서초구청/서울시/보건복지부 요구안 1부. 끝.

[기자회견문]

**서초구 불법 미신고 영유아시설에서 발생한 학대사건을 강력히 규탄하며,
문제 시설을 즉각 폐쇄하고, 피해 영유아와 가족 중심의 사건 해결을 촉구한다!**

연일 학대폭력으로 아동이 죽고 있다. 정치인과 국민들은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했지만, 무엇이 잘못되어 아동들이 죽고 있는지는 아무도 답하지 않았다. 무엇이랄도 할 것 같았던 정부와 국회는 아동학대특별법 조차 만들길 거부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도 아동들은 학대폭력 속에 방치되어 있다.

오늘 우리는 또 다른 공간, 미신고시설 내 아동학대를 고발한다.

서울 서초구 생명의샘 교회. 이곳은 어떤 곳이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생명의샘 교회는 2019년 5월부터 불법으로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하며, 만 2세 미만의 영유아 10여명을 양육해왔다. 미신고 복지시설의 운영은 아동복지법과 사회복지사업법 상 불법 행위이다. 이 불법시설에서는 보육 또는 복지와 관련된 자격이 없는 종사자를 고용하고, 일상적으로 거주 영유아를 학대한 정황이 확인되었다.

불법시설을 운영한 목사와 종사자들은 상습적으로 영유아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했다. 우는 영유아를 “악한 영”을 빼야 한다며 방에 가두고 몇 시간이고 혼자 울도록 방치했다. 때론 “악한 영”을 쫓는다며 아동의 온몸을 때려가며 수 시간 기도했다. 치료가 필요한 영유아들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했고, 부실한 음식을 제공하였다. 저녁 6시가 되면 영유아들을 침대에서 나오지 못하게 한 채 강제로 재웠다. 질식사 위험이 있는 소위 “셀프수유”를 한 채 아동들이 우유를 다 먹도록 돌보지 않았다. 영유아들에 대한 성희롱 발언도 수시로 있었다. 작년 6월경 목사가 돌보던 영유아가 질식으로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왜 아동과 가족은 공적 아동보호체계의 지원을 받지 못했는가?

왜 불법 미신고시설이 후원물품과 후원금을 받으며 유지되는 동안 지자체는 몰랐는가?

왜 시설 내에서 아동이 죽는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경찰, 지자체는 시설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확인하지 않았나?

수사기관에 촉구한다.

수사기관은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아동학대 가해자들을 아동학대범죄특례법 등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여야 한다. 수사과정에서 진실 규명에 협조하는 시설 종사자, 자원봉사자, 영유아의 가족들은 공익제보자들로 철저히 보호받아야 한다.

서초구청에 촉구한다.

일부 영유아들은 베이비박스를 통해 이 불법시설로 들어왔다. 베이비박스는 영유아를 살리는 최후의 보루인 것처럼 포장되어 있지만, 실상은 영유아 유기를 부추기며 친부모와 영유아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있다. 이러한 베이비박스에 연결된 불법 미신고시설에서 학대까지 자행된 상황은 유기된 영유아들이 사각지대에 방치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서초구 관내에서 불법시설의 운영자가 후원자와 자원봉사자를 모아 2년 동안 버젓이 운영하면서 영유아를 학대하는 동안, 서초구청은 무엇을 했는가? 서초구청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작년 6월 영유아가 질식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경찰조사가 진행되었지만 서초구청은 불법시설을 인지하거나 대응하지 못했다. 그후 일 년 간 불법시설에서 영유아들이 학대당한 것에 대해, 지금이라도 서초구청장은 사죄하고 사건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불법시설을 폐쇄하고 피해영유아의 신속한 구조와 안전한 보호, 피해아동가족에 대한 지원을 즉각적으로 진행해야한다.

정부에 촉구한다.

이번 사건은 한 개의 불법시설, 하나의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의 불법아동유기 시설, 입양기관들과 미신고시설들은 서로의 존재를 알고 연결되어 있다. 전국의 제2, 제3의 생명의샘에서 아동들은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미신고시설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정부는 신속하게 미신고 보육시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아동들을 긴급구조 해야 한다.

정부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를 수용하여 가능한 모든 아동에게 가정 기반의 양육을 지원, 촉진하고,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없는 아동을 위한 가정위탁의 질을 향상하고 확대하기 위한 모든 인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당하여야 한다. 가족이 아동 유기에 내몰리기 전에 양육의 책임을 사회화 하고, 위기 상황의 가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에서 영유아들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대한민국의 의무로, 서초구청과 수사기관, 정부기관 모두에게 적용된다.

우리는 이번 사건에 대해 분노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단 한 명의 아동도 시설에 남겨지지 않기를 바라며,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하나. 불법 미신고 보육시설에서 발생한 영유아 학대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가해자들을 엄단하라.

하나. 수사과정에서 공익제보자들, 영유아와 그 가족의 인권을 철저히 보장하라.

하나. 서초구청은 불법 미신고 시설을 방치한 것에 대해서 사죄하고, 시설폐쇄, 피해영유아 보호 및 지원에 즉각 나서라

하나. 정부는 전국의 미신고 보육시설의 현황을 파악하고, 시설 수용이 아닌 아동 최선의 이익이 고려된 권리로서의 보호를 지원해야 한다.

2021년 5월 12일

국제아동인권센터, 사단법인 두루,
움직이는청소년센터EXIT,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정치하는엄마들

[서초구 생명의샘 교회 미신고 영유아 아동복지시설 아동학대 사건 해결을 위한 서초구청/서울시/보건복지부 요구안]

■ 사건 개요

서초구 생명의샘 교회의 서00목사는 2019년 5월부터 미신고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함. 보육 또는 복지 관련 미자격자에 의한 양육행위가 2년여 기간 지속됐으며, 미신고 복지시설 운영은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상 불법 행위임. 불법적 시설 운영을 하며 10명 이상의 영유아를 학대한 정황이 있음.

■ 아동 미신고시설 문제

▲ 2005년 SBS를 통해 서울 은평구 ‘수경사’ 사찰에서 10여명의 아동을 양육하는 미신고시설을 운영하며 상습적으로 아동을 학대한 사건이 공개됨. 아동을 감금하고,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50도 물로 목욕시키는 등 학대 행위가 지속했고, 아동보호비용을 횡령하고, 입양을 보내며 거금을 요구하는 등 불법적으로 시설을 운영해옴. 당시 수사기관의 느장대응으로 수사의뢰일로부터 1주일 뒤에야 압수수색 등이 진행돼 학대와 횡령 등의 증거 수집에 실패함.

▲ 수경사 사건 공개 이후 아동들은 원가정 복귀(1명), 입양(4명), 장기보육시설 입소(8명) 등의 보호조치가 이뤄졌으나, 다수의 아동이 다시 시설에 입소되는 상황은 반복됨. 보건복지부는 ‘미신고 아동시설의 아동보호 실태 파악 및 관리 철저’(2005년 7월 19일)라는 안내지침을 16개 지자체에 내렸으나 후속 조치는 없었음.

▲ 장애계에서는 지난 20여년간 시설 내 인권침해에 대응해옴. 미신고시설의 경우 다수가 기도원 등 종교시설의 외피를 쓰고 있었고, 미자격에 의한 운영, 부적절한 주거환경과 횡령, 학대 등의 인권침해 문제로 언론에 공개되어 왔음. 그러나 미신고시설의 현황 파악에 종교기관들의 저항이 있어왔고 국가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음. 오히려 미신고시설 양성화를 핑계삼아 ‘조건부 신고제’를 진행하고, 미신고시설들에 2003년 42억원, 2004년 610억원, 2005년 230억원 등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거주시설만 확대·강화해옴. 그러나 2011년 이정선 의원실은 미신고시설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같은 해 국감에서 정부의 미신고시설 양성화 정책으로 시설 문제가 되지 않았으며,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전면적 전수조사를 주문함. 이에 당시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설은 즉시 폐쇄조치하겠으며 향후 인권단체와 연계해 시설조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답변함.

▲ 이번 사건의 문제시설인 생명의샘 교회는 2020년 6월 시설 내 아동 질식 사망 사건으로 경찰 등에 의한 조사 방문이 있었음. 시설의 불법운영 및 학대 정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진행되지 않음. 수명의 아동들이 부적절한 보육환경에서 양육되고 있는 것을 국가기관들이 목격했으나 문제를 인식하지 못했고 또 다시 아동들이 학대상황에 노출됨. 한편 해당 시설의 아동들은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후 공식적 절차없이 미신고시설에 입소된 것으로 추측됨. 베이비박스 역시 불법미신고시설로 정부의 관리·감독 부재 속에 운영되고 있음. 국가 스스로 국가 책임을 강조하지만 스스로 권리옹호가 어려우며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책임의 실천은 이뤄지지 않고 있음.

■ 학대 및 불법 정황

▲ 상습적 영유아 폭언·폭행 등의 학대

- 목사님과 종사자A씨는 아이들이 울면 아이에게 “너 방에 들어간다.” 라는 협박성 말을 하고 실제로 우는 아이들을 방에 혼자 가두거나 때리는 일이 수없이 많았다.
- 00(아동)이가 목사님의 큰 목소리에 놀라서 더 크게 울자 “이 못된 버릇 어디서 배웠냐. 어디서 감히 소리를 질러?” 라고 말하며 아이를 강하게 흔들고 아이의 허벅지와 등을 때리고 계속 소리를 지르며 아이를 혼냈다.
- 00(아동)이 물을 삼키는 것을 힘들어 했는데, 물을 안 먹으면 똥쌀 때 힘들어 한다며 이유식을 먹인 뒤 강제로 물을 먹였다. 아이의 입에 물을 들이 부었고 아이가 괴롭게 우는데도 그 물을 다 마실 때까지 강제로 우는 아이를 붙잡고 물을 먹였다.

▲ 운다는 이유로 만2세 미만 영유아 혼자 방에 감금

- 아이들이 울고 때 쓸 때마다 방 안에 아이를 혼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버린다. 아이가 계속해서 울어도 안아서 달래 주지 않고 스스로 울음을 멈출 때까지 아이를 방치한다. 그렇게 아기를 가두고 방치하는 일은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된다. 아기들이 울음을 그치지 않거나 말을 듣지 않으면, “너 방에 들어갈래?” 라는 말로 협박하고, 그래도 안 되면 아기를 침대에 가두고 나오지 못하게 난방텐트의 지퍼를 잠가버린다.

▲ 우는 영유아를 ‘악한 영’을 핑계로 때리며 기도

- 종사자A씨가 00(아동)의 머리, 등, 팔 등 신체 곳곳을 손으로 치면서 방언 기도를 했다. 아기가 따가울 것 같은 정도로 계속 손으로 아이를 치면서 기도했고, 목사님은 그걸 보고 멍들면 안 되니까 너무 세게 치지는 말라고 이야기했다.

▲ 치료가 필요한 아동을 병원 진료를 받지 않고 방치

- 00(아동)이 새벽부터 미열이 있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열이 더 높아졌다. 아기가 고열이 나면 바로 병원에 가야하지 않냐고 이야기했지만 목사님과 종사자B씨는 보리차를 먹으면 열이 내린다고 하며 아이에게 계속해서 보리차를 먹였다. 그래도 열이 내리지 않자 그제야 해열제를 먹고 열패치를 붙여주었다. 병원은 데려가지 않았다.
- 00(아동)의 피부가 심하게 안 좋았다. 목사님은 00(아동)에게 로션만 자주 발라주라고 했다.

▲ 영양이 불균형한 식사 제공 및 부적절한 거주공간에서의 양육

- 11월쯤부터 아이들이 밥을 잘 안 먹고, 먹이기가 힘들다는 이유로 매번 국에 밥을 말아서 먹인다. 아이들은 제대로 씹지 않고 음식물을 삼킨다. 또 아이들이 잘 먹는다는 이유로 백김치, 오이지, 무생채만 반찬으로 제공하고 단백질이 부족한 식사가 제공된다. 어른 간에 맞춘 국을 아이들에게도 제공해서 짠 된장국을 먹은 뒤 아이들의 볼이 빨개진 적도 있다.
- 아침에 아기가 일어나면 분유를 먹였고, 그 다음 냉동 블루베리를 갈아 넣은 요플레를 먹였다. 아침에 어떻게 밥을 먹이냐며 아침밥은 제공하지 않는다.
- 새벽에 정말 많이 추웠다. 어른도 담요를 두르고 잘 정도로 추웠는데, 000(아동)은 작은 방 바닥에 쿠션을 두고 그 위에서 재우고 있었다. (해당 건물은 상가용 건물로 주거난방 시설이 되어 있지 않음)

▲ 비상식적 보육 방식

- 아이들 모두 저녁 6시가 되면 쪽쪽이를 물리고 침대 안에 넣어두고 나오지 못하게 한 뒤 강제적으로 재웠다. 아기가 울어도 울다 지쳐 잠들 때까지 그대로 두라고 하는 건 늘 반복됐다. 아이들은 목사님이 새벽에 우는 아기에게 소리를 지르고 혼내도 그 소리에 놀라거나 잠에서 깨지 않았다.
- 00(아동)에게 분유를 먹일 때 콩콩 싸매 움직이지 못하도록 묶고 강제수유(셀프수유)를 시킨다. 분유병을 꽂아 놓고 다 먹었는지 몰라 아이가 빈 분유병을 빨고 있었다. 다른 아동이 간식을 잘 먹지 않자 난방텐트에 넣어 가둬두었다.
- 00(아동)이를 안고 있었는데 귀에서 냄새가 많이 나서 목사님에게 이야기했더니, “개가 좀 더러워서 그렇다. 여기 오는 애들은 냄새가 나는데 씻기고 기도해주다 보면 냄새가 빠진다”고 말했다. 얼마 뒤 00의 엄마가 와서 귀에서 냄새가 난다고 말해주니 병원에서 귀를 잘 말려주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줬다. (아동은 중이염을 앓고 있었음)

- 종사자B씨는 저녁식사를 하며 “정인이 사건은 나라에서 기독교 탄압을 하기 위해 이슈화 시키는 것이다. 00(아동)이 작은 일에도 때 쓰고 울며 반항하는 이유가 목사님과 종사자A씨가 기도를 많이 하니깐 00(아동) 속에 악한 영이 목사님과 종사자A씨를 거부해서 그러는 것 같다.” 라고 말했다.

▲ 상습적 영유아 성희롱 (제보 내용 생략)

▲ 불법 미신고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후원 모집

▲ 코로나19 시기 방역지침(자원봉사 방문자 출입기록 미구비 등) 미준수

■ 사건 해결을 위한 서초구청-정부 요구안

1. 서초구와 서울시는 미신고시설 내 학대피해아동들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하고 지원하라
 - 고발 즉시 아동 개별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한 보호 조치 진행 및 아동의 등록 주소지와 관계없이 실거주지인 서울시가 보호조치에 대한 책임
 - 고발 즉시 아동 보호자의 심리적 안정을 고려하며 사건 내용 공유 및 가족 상담 진행하고, 무리한 원가정 보호를 강제하지 않을 것
 - 구조 즉시 개별 아동 및 가족의 사례담당자 배치
 - 구조 즉시 아동의료전문가에 의한 신체적·심리적 의료 진단 및 치료 병행
 - 시설 일시보호 시 해당 아동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공동 입소
 - 대규모 양육시설 장기 입소 금지. 무리한 대리/친족위탁 지양, 원가정 보호 어려울 경우 일반가정 위탁 최우선 지원.
 - 거주지 확정 뒤에도 통합적 사례지원 및 학대폭력 치유를 위한 의료지원
 - 보호조치 전반에 아동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
2. 서초구와 서울시, 수사기관은 가해자를 엄단할 수 있도록 시설 내 아동학대와 불법운영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
3. 서초구와 서울시는 진상 조사 과정에서 영유아, 공익제보자들과 조사에 협조하는 사람들의 인권을 철저히 보호하라
4. 서초구는 생명의샘교회 불법 미신고 아동복지시설을 즉각 폐쇄하라
5. 서울시와 보건복지부는 전국의 미신고 시설 현황 파악 및 시설 내 아동들을 긴급 구조하라
6. 서울시와 보건복지부는 원가정에서 보호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아동에게 시설 수용이 아닌 아동 최선의 이익이 고려된 권리로서의 보호를 제공을 위해, 대안 양육 체계를 마련하라

[참고자료 2] 진실탐사그룹 설록 연재 기사 스크랩

1화. '2개월 아기 사망, 방치, 고함.. 미신고아동시설의 실상' 2021년 5월 12일

<https://www.neosherlock.com/archives/12134>

2화. “애는 밭상, 재는 진상”.. 교회 십자가에 가려진 아이들’, 2021년 5월 17일

<https://www.neosherlock.com/archives/12183>

3화. ‘미신고시설의 아동학대.. “모두 내 책임” 엄마는 자책했다’, 2021년 5월 25일

<https://www.neosherlock.com/archives/12225>

4화. ‘학대 피해만 두 번.. 미신고시설 거주 3세 아이의 슬픔’, 2021년 5월 27일

<https://www.neosherlock.com/archives/12244>

5화. ‘교회에서 아이 사망과 학대 의혹.. 국가는 책임 없나’, 2021년 6월 11일

<https://www.neosherlock.com/archives/12289>

[참고자료 3] "서초구 미신고 아동복지시설은 아동학대 사각지대", 베이비뉴스 5월 13일¹⁾

2019년에 5월에 생긴 서초구 생명의샘 교회의 아동복지시설. 지난 2년동안 만 2세 미만 영유아 10여 명을 보육해 온 곳이다. 하지만 해당 건물은 주거용 건물이 아닌 사업용 건물로, 미신고시설에서 영유아를 보육한 셈이다.

서○○ 목사와 종사자들은 시설 아동들을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하는 일도 발생했다. 울음을 터트리는 아동들은 일상적으로 수시간 방안에 감금하거나, ‘악한 영’을 내쫓는 다며 아동의 신체 곳곳을 때리며 기도를 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일삼았다. 2020년 6월 해당 시설 내 거주 아동이 질식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조사 등이 진행됐으나, 조사가 심도 있게 진행되지 않아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

국제아동인권센터, 사단법인 두루, 움직이는청소년센터EXIT,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정치하는엄마들이 모여 서울시 종로구 서울경찰청 정문 앞에서 ‘서초구 생명의샘 교회 미신고 영유아 아동복지시설 학대 사건 고발 및 사건 해결을 위한 서초구청-서울시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12일 오전 11시에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서초구 생명의샘 교회 아동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과 더불어 미신고 영유아 아동복지시설을 고발하고 탈시설을 촉구하는 자리였다. 기자회견 시작에 앞서 이윤경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센터장은 “아동학대 사건에서 피해자와 가족이 궁금하겠지만, 그들을 찾는 과정을 주의해 달라. 이미 이 피해로 힘들어 하고 있고 이후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조심스러운 마음을 내비쳤다.

1)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5156>

국제아동인권센터 등은 지난 10일 서초구청 측에 서초구 생명의샘 교회 미신고 영유아 아동복지시설의 만행에 대해 신고를 했으며, 서초구청은 신고 당일 폐쇄 조치를 했다.

◇ 종교라는 이유로, “미신고 아동복지시설 묵인”

이번 사건은 단순한 아동학대 사건이 아니다. 아동학대의 문제를 넘어서 미신고 아동복지시설이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최초로 지적하는 사건이다. 마한열 사단법인두루 변호사는 “아동보호의 1차적 목적은 가정이다. 하지만 가정에서 역할을 못한다면 국가가 해야 하는 것이다. 미혼한부모가 경제적 자립을 목적으로 양육위탁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동복지시설”이라고 말하며 미신고시설이 왜 위험한지 설명했다.

해당 시설에 관해서 “해당 시설 대표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아이를 위탁하는 비영리시설이라고 했다. 아동은 베이비박스를 통해 소개받기도 했으며 후원과 봉사자도 모집했다. 그러나 이곳은 미신고시설이기에 시설 종사자나 봉사자들을 교육하거나 경력조회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결국 미신고 아동복지시설은 아동인권의 사각지대다. 마한열 변호사는 “미신고 아동복지시설과 베이비박스를 함께 검토해야 된다”며 “베이비박스 역시 아동을 유기하는 결과가 되며, 베이비박스에 놓인 아이들은 미신고 시설로 인계되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황혜신 연구활동가는 제보자들의 발언을 낭독했다. 제보자들은 “이곳에서 아동은 움직일 수 없게 고정된채 강제 수유, 엎드려서 재우기, 우는 아동 협박, 언어폭력, 신체폭력, 성희롱 등이 있었지만 문제없이 시설을 운영했다”며 “아동의 특성 공부를 권유했지만 묵인당했고 학대 행위는 심화됐다”고 밝혔다.

이어서 “해당 시설 거주 아이가 두명이나 죽었고 외면당했다. 수많은 아동들이 죽을때 우리는 무엇을 했다. 관심부족과 예산부족으로 이번 사건이 무마되지 않길 바란다. 미신고 시설은 모두 폐쇄되고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경찰들은 아동에 대한 전문성을 갖춰서 학대당한 아동을 구해야 한다”고 외쳤다.

미신고 아동복지시설에 관해서 김정하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는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어쩔수 없이 가게 되는 곳이 미신고시설이다. 2005년 서울시 은평구에 있는 수경사라는 소규모 사찰에서도 미신고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했고 아동학대 정황이 있었지만, 종교시설이라는 이유로 무마됐다. 16년이 지났는데 왜 세상은 바뀐 것이 없나”라며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다.

또한 “이들이 원하는 것은 장애인이나 아동을 보호한다는 미명으로 후원금을 모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아동학대 사건엔 경찰과 의사 함께 동행해야

그렇다면 피해 아동들은 어떤 조치가 처해졌을까? 그리고 해당 아동들에겐 어떤 치료가 필요한 것일까.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피해아동들에게 즉각적 의료지원이 필요하다”며 “겉으로 보이는 상처가 없다고 건강이 좋은게 아니다.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경우 의료지원이나 적절한 상담치료를 받지 못해서 36개월 아이가 소아 우울증을 앓거나 성장한 뒤 폭력 성향이나 발달 지연을 겪기도 한다”고 정밀한 진단을 강조했다.

여기에 더해 “교통사고 시 사상자가 거리에 누워있는 상황에서 사건 조사하지 않는다. 아동학대 사건 발생시 현장에서 즉각진단이 필요하다. 미국은 아동학대 조사에 의사가 함께 출동한다”며 “반면 한국의 모든 아동학대사건은 아동이 치료하고 회복하는데 전문적인 인력과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유리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활동가는 “한부모의 경우 영유아를 키우면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안된다. 하지만 일을 하지 않고서는 키울 수 없고, 입양기관은 2살이 넘으면 아이를 거절한다”며 “양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지만 가정위탁을 못하게 한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 결국 엄마들은 아이를 키우기 위한 지원을 받기 위해 구걸해야 했고, 최후에는 미신고 아동보호시설로 향할 수 밖에 없다.

박유리 활동가는 “생명의샘 교회 미신고 영유아 아동복지시설에서는 아기가 사망해서 경찰이 시설 조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미신고 아동복지시설임을 알았다. 하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다른 미신고시설에서 아동학대가 이뤄지지 않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서초구청 “해당 시설 즉각폐쇄, 아동 보호 최선을 다하겠다”

서초구 생명의샘 교회 학대와 불법 정황은 ▲상습적 영유아 폭언·폭행 등의 학대 ▲만 2세 미만 영유아 운다는 이유로 혼자 방에 감금 ▲우는 영유아 ‘악한 영’을 핑계로 때리며 기도 ▲치료가 필요한 아동 방치 ▲영양 불균형한 식사 제공과 부적절한 거주공간에서 양육 ▲비상식적 보육 방식 ▲상습적 영유아 성희롱 ▲불법 미신고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후원 모집 ▲코로나19 시기 방역지침 미준수다.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사건 해결을 위한 서초구청과 정부에게 ▲미신고시설 내 학대피해아동 신속 안전 구조하고 지원 ▲서초구와 서울시, 수사기관은 가해자가 엄단할 수 있도록 시설 내 아동학대와 불법운영에 대해 철저히 수사 ▲서초구와 서울시는 진상 조사 과정에서 영유아, 공익제보자들과 조사에 협조하는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 ▲생명의샘교회 불법 미신고 아동복지시설 즉각 폐쇄 ▲전국의 미신고 아동복지시설 현황 파악과 시설 내 아동 긴급 구조 ▲원가정 보호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아동에게 시설 수용이 아닌 아동 최선의 이익이 고려된 권리로써의 보호 제공을 위한 대안 양육 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뒤 오후 1시 서초구청 아동청년 담당자와 시민단체 대표의 미팅이 있었다. 미팅에서 시민단체 대표들은 ‘아이 건강검진, 소아정신과 협업, 부모 상담, 전수 조사’ 등을 요청했다.

서초구청 아동청년과 관계자는 “학부모 상담, 피해아동 건강검진 모두 진행되고 있고 전수 조사도 예정에 있다. 아동학대, 미신고 아동복지시설 관련해서는 제보가 없으면 안된다.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쉽터나 아동보호 대응센터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참고자료 4] “서초구청, 미신고 아동복지시설 '방치' 의혹....시민단체 고발 후 폐쇄” 경향신문 5월 23일¹⁾

서울 서초구청이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생명의샘 교회 아동복지시설이 미신고 불법시설이라는 것을 제보받고도 방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2월 교회 자원봉사자가 구청에 미신고 시설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한다는 의심이 든다고 제보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6월에는 이 시설에서 아동 사망사건이 일어나 경찰 수사까지 진행됐지만 관계기관들은 미신고 시설이라는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구청은 시민단체들이 시설관계자들을 고발한 이튿날인 지난 11일에야 폐쇄조치했다.

2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생명의샘 교회 자원봉사자 A씨는 지난 2월 서초구청에 전화해 생명의샘 교회에서 미신고된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하고, 무자격자들이 아이들을 돌보면서 아동학대가 일어나고 있다고 제보했다. 구청 직원은 “미인가 시설은 (구청에서) 관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A씨는 직원이 안내해준 아동학대 관련 부서로 다시 연락을 취했지만 계속 통화 중이어서 닿지 않았다. 이 교회는 당시 아동복지시설 운영을 구청에 신고하지 않아 아동복지법과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하고 있었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제보자와의) 통화 부분은 (구청) 내부 소통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해당 시설에서 생후 2개월 영아가 질식사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 수사가 벌어질 때도 관계 기관들은 미신고 시설임을 확인하지 못했다. 경찰은 당시 이 시설 운영자인 교회 B목사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 과정에서 구청 등 관계 기관들은 미신고 시설이라는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당시 사건 현장엔 아동보호전문기관도 투입됐다.

1)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05231704001>

당시 경찰 관계자는 “영아사망에 집중하느라 시설의 허가 여부는 몰랐지만 아이들이 있어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고 (담당 구청) 직원에게 관리를 요청하는 공문을 구청에 보내고 구두로도 협조를 요청하도록 했다”며 “당시 구청에서는 신고되지 않은 시설은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답했다”고 주장했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조사 결과 공문 등이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고, 당시 (사건) 수사관은 (시설 점검을 요구하는) 공문을 (구청에) 보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아동인권단체들은 지난 10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생명의샘 교회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2명과 B목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생명의샘이 2019년부터 불법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하며 10여명의 영·유아들에게 폭언·폭행을 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했다”며 “지자체 등은 불법 시설임을 알면서도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질식사한 피해아동의 부모는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하는 것은 물론 서초구청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A씨 등 여러명의 제보자와 고발인인 시민단체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B목사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다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미신고 아동복지시설에 대해 당국의 관리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지자체는 관내 미신고 아동복지시설 실태를 파악해 반기마다 복지부에 보고토록 하고 있지만 권고사항일 뿐이다. 실제로 2016년 이후 복지부에 관련 내용을 보고한 지자체는 없다. 이 때문에 미신고 시설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도 없다. 지자체가 미신고 시설을 방조해도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도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보가 없으면 미신고 시설을 사전에 발견하기가 어렵다”면서 “생명의샘 같은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단체 등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복지부는 지침을 강제화해 구명난 제도를 보완하고, 미신고 시설을 운영할 경우 처벌 기준을 더 강화해야 한다”며 “불법 시설에 아이를 보낼 수밖에 없는 부모들을 제도권으로 끌어올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문 내용〉

수신 : 서초구청 아동청년과, 서울시청 여성가족정책실, 서울시아동복지센터 학대예방팀
제목 : 서초구 생명의샘 아동 미신고시설 학대피해아동 지원 관련 질의 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는 청소년들이 거리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위기 상황에 대처하여 건강하게 자립하며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주체성을 발휘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버스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청소년 인권이 보장되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3. 지난 5월 10일 본 기관과 정치하는엄마들,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등 3개 단체는 서초구 생명의샘 아동 미신고시설 내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서초경찰서에 고발을 진행하고, 서초구청과 아동들의 빠른 구조와 이후 안전하고 적절한 보호를 위해 보호자와 충분한 소통과 정보제공 등에 대해 협의하고 서초구청의 책임 하에 철저히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4. 그러나 고발 이후 3주가 지난 현재, 피해아동과 아동의 보호자를 지원하는 과정에 심각한 정보 누락과 미비점을 보호자와 본 단체들이 같이 목격하고 있어 관련 질의(붙임자료 1)를 해당 사건의 각 책임이 있는 기관에 보냅니다.

5. 해당 질의에 대한 답변을 2021년 6월 3일(목) 오후4시까지 관련 사건 대리변호인 사단법인 두루 마한열 변호사에게 메일로 송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서초구 생명의샘 아동 미신고시설 학대피해아동 지원 관련 질의서

2021.06.02

1. 피해아동 보호자에게 아동 보호조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

- 보호자들에 따르면 5월 10일 이후 서초구청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의 보호자와 개별면담을 진행함. 해당 면담은 아동이 당한 학대와 미신고 시설에 대해 보호자가 목격하거나 인지한 상황에 대한 면담으로 아동의 보호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면담은 아니었음.
- 아동들이 일시보호시설로 전원된 후, 이름이 확인되지 않는 서초구청 공무원이 보호자에게 아동들의 이후 보호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일주일 이내로 결정할 것을 재촉함. 이 과정에서 “보육원,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을 보호자에게 선택지로 알렸으나 각 제도의 특징과 장단점에 대해 설명하지 않음. 심지어 보호자 일부는 가정위탁을 입양으로 알고 있기도 함.

- 또한 역할이 명확하지 않은 서초구청과 보호자의 지자체 공무원 여럿이 보호자에게 아동의 일시보호 이후 보호 관련하여 “아동을 데려갈 생각은 없는지, 아동을 진짜 키울 수 없는지” 등의 질문을 중복적으로 하였고 보호자들은 자신들이 아동을 맡을 수 없는 상황에 심각한 죄책감을 갖거나 아동을 보호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무리하여 아동을 데려가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어 아동과 가족의 이후 위험상황 발생의 가능성이 있는 상황임. 보호자가 미신고시설에 아동을 보내기 전에도 보호자가 국가에 아동의 보호를 의뢰했을 때도 위와 같은 질문이 반복됐고, 보호자들은 국가가 아닌 미신고시설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음.
- 한편 A아동의 보호자가 수차례 서초구청에 가정위탁을 시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서초구청은 공동생활가정, 24시간어린이집을 계속 권유함. 5월 10일 본 단체들과의 협의 회의에서 가정위탁을 우선 시도할 것을 협의했었으나, 보호자들에게는 가정위탁 자체를 우선 제안하지도 않았고, 보호자가 가정위탁에 대한 의사를 표시해도 “가정위탁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 “가정위탁은 안 될 가능성이 높다” 등의 의견을 지속함. 보호자들은 공무원의 이 같은 의견이 반복되니 불안함을 호소하고 있음.

질의내용

<서초구청>

- 피해아동 보호자의 주 상담부서는 어디입니까? 상담부서가 맡은 역할은 무엇입니까?
- 피해아동의 보호자에게 아동의 일시보호 이후 관련 정보제공이 충분하지 않았던 상황을 보완하기 위한 서초구청의 방안은 무엇입니까?
- 서초구청은 「아동복지법」 제15조, 제37조에 근거한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 등 아동의 보호자에게 추후 이용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제공하였습니까?

<서울시청, 서울시아동복지센터>

- 시설 내 학대피해아동의 보호자에게 아동의 보호조치 관련 정보를 제공할 때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정보에 대한 매뉴얼이 있습니까? 있다면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지 관리·감독 하고 있습니까?

- 아동 보호자 상담 체계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아동 원가정복귀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을 여러 공무원이 반복해서 진행하고, 양육회피를 의심하는 질문이 계속되는 상황에 대한 서울시와 서울시아동복지센터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2. 아동의 전원 및 원가정복귀 관련한 절차 상 미비점과 보호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

- 6월 1일 일시보호시설에 보호 중이던 B아동이 Q시 S보육원으로 전원됨.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6월 2일 인천 미추홀구 공무원이 통보함. 이 과정에서 서초구청으로부터 보호자가 받은 연락은 없음. 아동의 보호자는 5월 28일 서초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가정 위탁 시도 의사를 문자로 보냈으나 답장을 받지 못했고, 그 사이 아동은 보호자와 상의 없이 인천 보육원으로 전원된 것. 인천 미추홀구 공무원은 보호자와의 통화에서 가정 위탁에 대한 정보는 서초구청으로부터 공유받지 못했고, 아동이 있었던 일시보호시설의 거주기간이 만료되어 전원되어야 했다는 이야기만 전해들음.
- 5월 10일 아동 분리 당시 해당 시설에서 1년간 지냈던 C아동이 일시보호시설이 아닌 그룹홈으로 이동함. 해당 아동은 보호자가 올해 초 생명의샘 몰래 다른 시설을 광진구청에 문의했었고 당일 입소 가능한 그룹홈을 소개받고 보호자가 바로 이동함. 그러나 해당 아동은 1년간 학대 피해를 받은 당사자로 서초구청이 아동의 지원에 대한 책임이 있으나 아동 보호자에게 아동에게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 안내되지 않음. 단체들의 문의로 해당 아동은 다른 아동보다 일주일 늦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었음.
- 21년 1월생 D아동은 보호자가 현재 주거가 없어 모텔에서 지내고 있고, 부모 모두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상황. 아동의 보호자 역시 서초구청으로부터 아동과 가족이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못했고, 보호자가 키울 수 없는지에 대한 질문만 반복적으로 받음. 그 과정에서 보호자는 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결정하고 구청에 의사를 전했으나, 같이 살기 위한 주거, 소득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은 없는 상황. 그 사이 구청은 원가정복귀를 결정함. 아동이 원가정으로 복귀할 경우 보호자와 함께 모텔에서 지내야 하는 상황.

질의내용

〈서초구청, 서울시청, 서울시아동복지센터〉

- 아동의 전원 및 원가정복귀 결정은 어떤 절차를 통해 이뤄졌습니까?
- 아동의 전원이 완료된 후 보호자에게 통보된 상황에 대한 각 기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서울시와 서초구청이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진행할 때, 아동 최상의 원칙에 따라 제5항 보호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제4항 보호자와 함께 아동의 개별 보호·관리 계획을 세웠습니까?
- 또한 같은 법 제12조 1항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통해 사례를 심의하고 결정하였습니까?
- 아동이 전원되고 난 후, 서초구청이 아동이 전원된 지역의 지자체에 공식적으로 요청한 협조내용은 무엇입니까? 아동들의 추후 필요한 지원이 전원된 지역 지자체에서 제공되지 않을 경우, 서초구청과 서울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 2020년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서비스 업무매뉴얼에 따르면 아동의 원가정복귀 결정 시 양육상황점검이 진행되는데, D아동의 원가정복귀 결정은 점검 상 아동 최상의 원칙에 따라 진행되었다고 보십니까? 아동의 원가정 복귀 이후 가족에 대한 주거, 일자리, 의료 등에 대한 지원계획은 있습니까?

[참고자료 5] 서초구청 미신고시설 학대피해아동 지원 관련 답변서

“정령과 친절로 주민을 섬기겠습니다”



서초구

수신자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센터장 귀하
(경유)

제목 서초구 미신고시설 학대피해아동 지원관련 답변서

1.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는 귀 단체에 감사드립니다.
2. 귀 단체에서 `21.6.2에 질의하여 주신 '서초구 생명의샘 아동 미신고시설 학대피해아동 관련 질의 건'에 대해 불임과 같이 답변서를 보내드리니 세부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추가 문의 사항은 서초구청 아동청년과 과장(조성덕 ☎02-2155-8893) 및 팀장(황유정 ☎ 02-2155-8980)에게 연락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임 : 서초구 답변서 1부. 끝.

서초구청장인



아동보호팀장 **황유정** 아동청년과장 06/09
조성덕

협조자

시행 아동청년과-7716 (2021.06.09.) 접수 ()
우 137-704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2584 / www.seocho.go.kr
전화 (02)2155-8857 /전송 (02)2155-8894 / bbai1004@seocho.go.kr / 비공개(3,6)

서초구 미신고시설(생명의샘 교회) 학대피해아동 관련 답변서

귀 단체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미신고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여 아동들을 보호조치 할 수 있었던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귀 단체에서 질의해 주신 미신고시설 학대피해아동 보호 조치와 관련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 아동학대 조사 및 피해아동 보호 보건복지부 업무지침

보건복지부의 「2020 아동학대업무매뉴얼」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관할 시·군·구는 피해아동의 주민등록지가 원칙입니다.

다만 피해아동이 거주하는 집단 시설에서 발생한 사례의 경우에는 ‘발생지’에서 사건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발생지에서 아동학대 판단조사 및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후 피해아동 주소지에서 사례관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의 ‘발생지’인 서초구는 즉각적으로 아동학대 조사 실시후 학대여부를 판단하였으며, 보호자의 의견을 반영한 피해아동 보호계획을 수립후 아동의 주소지에 해당 내용을 통보하고 아동을 보호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아동의 주소지에서 사례관리의 주 담당으로서 아동의 보호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건강검진 및 발달검사도 총괄하여 추진하는 등 관할지역 자치단체와 협업하여 아동의 보호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서초구의 미신고시설 학대 피해아동 보호 조치 결과

서초구는 `21.5.10.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등 단체로부터 관내 미신고시설에서 아동학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즉시 현장으로 경찰과 함께 출동하여 시설내부에 거주하던 5명의 아동 중 4명의 아동을 응급조치 후(1명의 아동은 `21.5.10. 타구 공동생활가정 입소) 일시보호시설로 입소시켰으며 사건조사와 아동의 보호 계획수립을 위하여 5.11~5.14동안 보호자인 부모들을 직접 만나 시설의 학대관련 내용 및 아동의 보호유형에 대해 안내하고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어린 아동들이 낯선 보호시설에서 지내는 동안 느낄 불안을 최소화 하기 위해 `21.5.11. 서울시 아동복지센터에 보호자들의 희망기간까지 해당 시설에서 보호하고 코로나 상황임에도 특별히 보호자와의 면회를 허가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결과 우리구 요청사항대로 협조를 해주기로 응답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의 보호유형이 결정되어 전원조치 될때까지 동일 시설에서 지냈으며 서초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입회하에 부모와 아동의 면회가 3차례 진행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의 건강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병원에서 5월12일 4명, 5월18일 타구 공동생활시설에 입소한 C아동에 대한 정밀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성모병원에 아동의 발달검사를 예약하였으며, 6~7월 기간동안 검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아울러 검사결과를 보호자와 아동의 보호관할 지역에 통보하여 실질적인 사례관리 서비스가 제공되어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아동의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서초구는 아동의 보호유형에 대한 보호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4명의 아동에 대한 개별보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1.5.21에 3명의 아동의 주소지 관할 지역으로 아동보호에 대한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이후부터는 아동의 주소지에서 보호자와 직접 연락하고 상담하여 아동의 보호유형 및 시설입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일시보호시설에 입소했던 4명의 아동중 B아동을 포함한 2명의 아동이 양육시설로 보호 결정되어 5월23일과 6월1일에 전원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21.5.27.에는 D아동을 포함하여 원가정이 아닌 시설에서 보호중인 아동들의 원가정 복귀 가능여부를 안건으로 사례판정단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그 결과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상황인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아동들의 원가정 복귀를 결정하도록 결론내렸습니다.

이후 5.31~6.3동안 그간의 경과내용을 정리하여 4명의 아동(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아동을 제외)에 대해 아동의 주소지로 아동학대 사례이관을 완료하였으며, 해당 지자체에서 사례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일시보호시설에서 보호중인 2명의 아동중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D아동은 보호자가 원가정 복귀를 희망함에 따라 보호자의 주소지인 E지역 아동보호전담요원과 공동으로 원가정 복귀를 위한 양육환경 점검 및 현장확인 조사가 진행중입니다.

나머지 A아동은 주소지 관할인 F지역에서 5월27일에 보호자와 상담을 진행하고 가정위탁으로 보호유형을 결정하였으며, 5월31일에 가정위탁지원센터로 보호조치 의뢰하였고 센터에서 보호자와 상담을 통한 일반위탁 가정과의 매칭을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피해아동 보호자의 주 상담부서 및 상담부서 역할 등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조사 및 아동에 대한 응급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1차적으로 사건발생지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들 토대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 사례판단을 하고 아동별 피해아동보호계획을 수립하여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 통보하고 통보받은 지역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담요원과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사례관리 서비스를 통해 상담이 진행됩니다. 아동의 주소지에서 아동학대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시 각 구청의 드림스타트팀, 희망복지팀,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아동 및 보호자의 가정에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아동복지법 제15조, 제37조에 근거한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 서비스 지원 등

우리구는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미신고 시설로부터 즉각분리를 하였으며, 이후 아동의 심신안정과 보호자의 상실감 등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보호조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아동의 심리적 안정을 고려하여 서울시 아동복지센터에 협조공문을 보내 보호자가 희망하는 기간동안 아이들이 기관에서 함께 지낼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아동 건강 확인을 위해 신속하게 소아과 전문의 진료와 건강검진을 실시하였고, 뿐만 아니라 서울성모병원에 피해아동들의 발달검사를 의뢰하였으며 7월까지 검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 아동의 전원 및 보호조치, 원가정복귀 결정 등에 대한 답변

본 사건의 피해아동과 보호자는 학대피해자와 가해자 관계가 아니지만 보호자가 적절한 양육환경을 제공하기 어려운 취약가정의 아동이 대부분으로 서초는 아동의 주소지에 '21.5.21.자로 아동의 보호를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아동의 주소지에서 요보호 아동의 보호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진행하도록 되어있는바, 이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개최도 관할 주소지에서 진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질의하여 주신 D아동의 원가정 복귀에 대한 사항은 아동의 보호자가 자녀의 보호유형을 시설입소에서 원가정복귀로 변경하여 희망함에 따라 '21.5.27 학대사례판정단에 해당내용을 안건으로 원가정 복귀 가능여부에 대해 논의한 바 있습니다.

논의결과 보호자가 원가정 복귀를 희망하므로 아동보호전담요원이 보호자의 양육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확인하여 양육이 적절할 경우 원가정으로 복귀를 추진하되 통합사례관리 및 복지서비스를 병행하여 받을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초구는 D아동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 '21. 6. 2. 사회 복지전산관리 번호를 부여하였으며,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서초구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수원시 보호전담요원과 함께 보호자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양육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보호자와의 상담을 진행하여

관련내용을 안건으로 서초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D아동의 원가정 복귀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만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가정 복귀 부적합으로 결정될 경우 다른 보호유형(가정위탁 및 시설보호)으로 아동을 보호할 예정이며, 원가정복귀로 결정시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주거,의료, 생계지원 등 종합적인 복지지원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관할지역에서 복지통합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하게 자랄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해주시는 귀 단체에 감사드립니다.